공 개

의안번호	제 6 호
보 고 연 월 일	2020. 2. 19. (제 3 차)

보고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결과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2. 19.

1. 보고주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제안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19. 12. 20. 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회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19.9월 '이자율지표 개혁 (Amendments to IFRS 9, IAS 39 and IFRS 7)'을 공표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이를 채택하려는 것임

< 한국의 이자율지표 개혁 현황 >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19.6월)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9.6.17,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 **이자율지표*1 개혁*2**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회계기준에 따라 **위험회피회계*3**를 **변동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추가**

*1 '이자율 지표'란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예: LIBOR, EURIBOR, CD금리 등)

*2 LIBOR 조작 사태('12.6월) 등을 계기로 이자율 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14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

*3 파생상품(위험회피수단) 등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위험회피대상항목) 등의 특정 위험(금리, 환율, 가격 등)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활동을 수행한 경우 적용되는 회계처리(이자율 지표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음)

○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기존 금융상품계약이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가 대두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래 전망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음**

* ① 위험회피관계는 적격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구성 ,②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의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③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효과가 있어야 함

○ 이에 따라, **적용조건**에 **예외규정**을 두어 **이자율 지표의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효과를 제거**하여 기존의 위험회피관계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위험회피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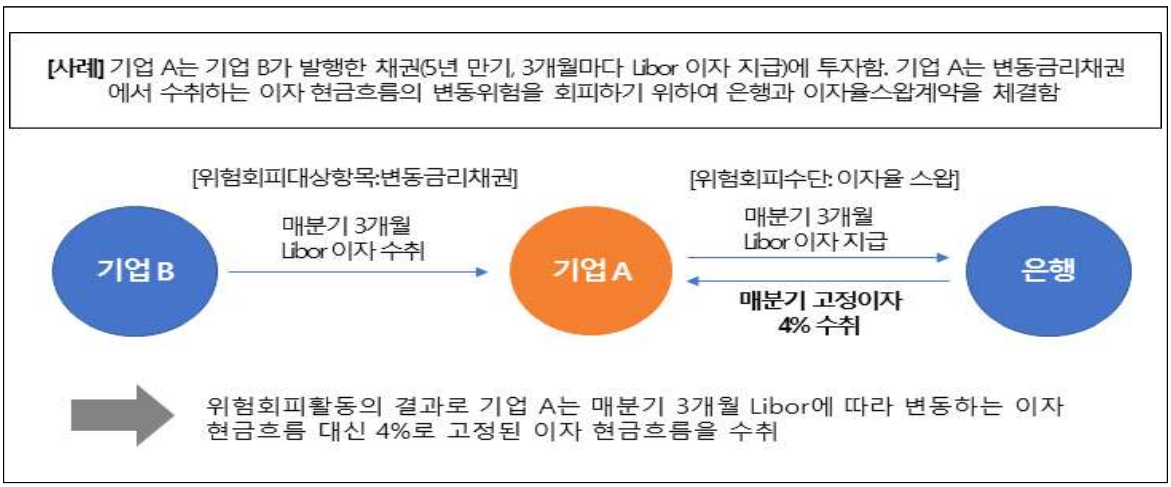

(1)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시 **현금흐름**이 **준거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위험회피대상항목(hedged item)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상거래**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함** (과거 유사한 거래의 발생빈도, 재무적·영업적 능력 등을 고려)

○ **이자율지표 개혁 이후**에 발생할 예상거래의 **이자율지표를 변경해야** 한다면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중단**

- 따라서, **위험회계**의 적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상거래의 **이자율지표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

* 위 [사례]의 경우 변동금리채권의 매분기 이자지급의 준거가 되는 Libor를 다른 이자율 지표로 대체하는 계약 변경은 없다고 가정

(2) 위험회피효과성 평가 : 전진적 평가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이 **향후 서로 상쇄될 것인지 미래 전망을 평가**(위험회피효과성 평가)하는 경우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준거하는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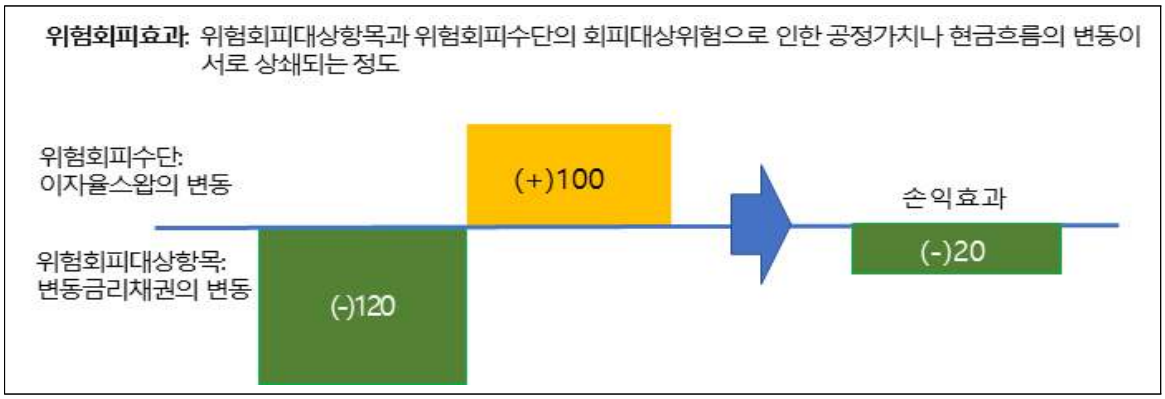

(3) 위험회피효과성 평가 : 소급적 평가

□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소급적 평가***는 **요구하지 않기로 함**

* 매 보고기간말마다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달성해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평가 (K-IFRS 제1039호만 요구)

(4) 별도로 식별 가능한 위험요소

□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함

○ 위험 구성요소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특정 이자율지표(예: Libor)를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의 시장유동성이 감소하는 경우 더 이상 별도로 식별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예외규정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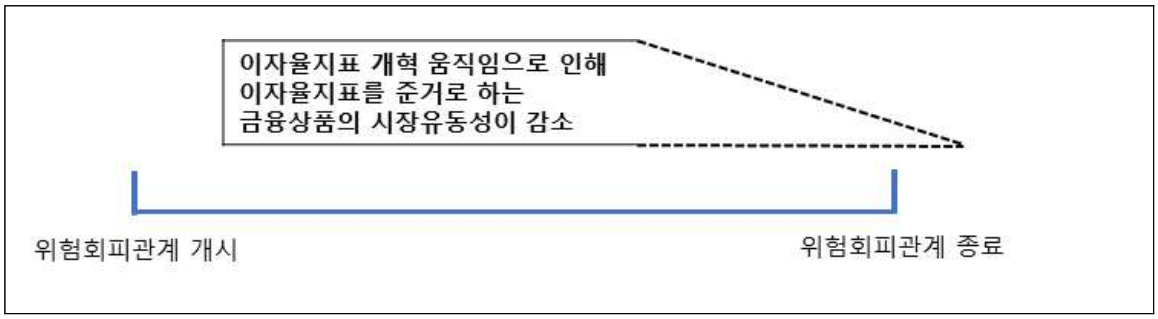

(5) 예외규정의 적

□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

(6) 주석 공시

□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공시

다. 시행일

□ **'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개정경과

□ 2019.10.30.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2019.11.4.~2019.11.30.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 2019.12.20.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나.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보고(2020.2.12.)

다. 관련법규(붙임1)

<별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12. 20.

저작권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0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재무보고기준의 본문,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0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4th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 ·····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2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 2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 4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 6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문단 6.8.1~6.8.12와 7.1.8을 추가하였다. 문단 6.8.1 앞에 새로운 제목을 추가하였다. 문단 6.8.4, 6.8.5, 6.8.6, 6.8.7과 6.8.9 앞에 새로운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7.2.26을 개정하였다. 이 문단에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제6장 위험회피회계

제6.8절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6.8.1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6.8.4~6.8.12, 문단 7.1.8과 7.2.26⑷를 적용한다. 이 문단들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한다. 개혁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위험회계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

6.8.2 문단 6.8.4~6.8.12의 적용 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1]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6.8.3 문단 6.8.4~6.8.12는 동 문단에 특정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계속 적용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

1)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6.8.4 문단 6.3.3에 따라 예상거래(또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의 재분류

6.8.5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6.5.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평가

6.8.6 문단 6.4.1(3)(가)와 B6.4.4~B6.4.6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6.8.7 문단 6.8.8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문단 6.3.7(1)과 B6.3.8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6.8.8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회피에 대한 문서화와 일관되도록 자주 위험회피관계를 재설정(즉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즉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문단 6.3.7⑴과 B6.3.8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위험회피관계의 최초 지정시점에 평가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이든 후속적으로든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 시 재평가하지 않는다.

적용 종료

6.8.9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문단 6.8.4를 적용하는 것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6.8.10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문단 6.8.5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전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6.8.11 다음 ⑴과 ⑵에 문단 6.8.6의 적용을 각각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위험회피수단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만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문단 6.8.11⑴에 명시된 때나 6.8.11⑵에 명시된 때보다 더 먼저 중단된다면 중단시점에 해당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6.8.6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6.8.12 항목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 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회피대상위험과(또는) 해당 항목이나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관련된 문단 6.8.9, 6.8.10 또는 6.8.11에 따라 개별 항목이나 금융상품에 문단 6.8.4~6.8.6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제7장 시행일과 경과규정

제7.1절 시행일

7.1.8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및 제1107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3월 공표)에 따라 제6.8절이 추가되었고 문단 7.2.26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제7.2절 경과규정

위험회피회계(제6장)에 대한 경과규정

7.2.26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전진 적용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⑷ 제6.8절의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6.8절의 요구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나 그 이후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제6.8절의 요구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에만 소급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개정(2019. 12. 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

문단 102A~102N과 108G를 추가하였다. 문단 102A 앞에 새로운 제목을 추가하였다. 문단 102D, 102E, 102F, 102H와 102J 앞에 새로운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위험회피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102A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D~102N과 108G를 적용한다. 이 문단들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한다. 개혁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

102B 문단 102D~102N의 적용 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2]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102C 문단 102D~102N은 동 문단에 특정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계속 적용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

2)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102D 문단 88(3)에 따라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재분류

102E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101(3)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효과성 평가

102F 문단 88(2)와 AG105(1)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02G 문단 88(5)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문단 AG105(2)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문단 88(2)의 전진적 평가를 포함한 문단 88의 그 밖의 조건을 적용한다.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102H 문단 102I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문단 81과 AG99F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102I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회피에 대한 문서화와 일관되도록 자주 위험회피관계를 재설정(즉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문단 81과 AG99F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위험회피관계의 최초 지정시점에 평가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이든 후속적으로든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 시 재평가하지 않는다.

적용 종료

102J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문단 102D를 적용하는 것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102K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문단 102E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전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102L 다음 ⑴과 ⑵에 문단 102F의 적용을 각각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

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2) 위험회피수단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만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문단 102L(1)에 명시된 때나 102L(2)에 명시된 때보다 더 먼저 중단된다면 중단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F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102M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단 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1)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회피대상위험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2)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102N 항목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 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회피대상위험과(또는) 해당 항목이나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관련된 문단 102J, 102K, 102L 또는 102M에 따라 개별 항목이나 금융상품에 문단 102D~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108G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07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2A~102N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나 그 이후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이러한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2019. 12. 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문단 24H와 44DE~44DF를 추가하였고 문단24H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위험회피회계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24H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8.4~6.8.12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⑴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⑵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 익스포저 중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정도

⑶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⑷ 이 문단들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에 대한 기술(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가정과 판단)

⑸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시행일과 경과 규정

44DE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24H와 44DF가 추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나 제1039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44DF 2020년 3월에 공표된 '이자율지표 개혁'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28(6)에 따른 정량적 공시사항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2019. 12. 2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6.545 다음에 새로운 제목과 문단 BC6.546~BC6.603을 추가하였다.

위험회피회계 (제6장)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BC6.546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이자율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생상품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이자율지표는 수조 달러와 그 밖의 통화들을 지수화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은행간 무담보 자금조달 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일부 이자율지표의 시장 조작 시도 사례는 일부 이자율지표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주요 이자율지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검토 후, 은행간 대출금리와 같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거래 데이터에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기준금리)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에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이는 결국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고서 '주요 이자

율지표 개혁'(개혁)[3]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BC6.547 2018년에 IASB는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대체 전 이슈'라고 함)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BC6.548 대체 전 이슈의 일부로서, IASB는 미래전망 분석을 요구하는 IFRS 9와 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개혁에 따라, 현재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그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때 변경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은 계약상 특정된 현금흐름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현금흐름 모두를 포함한다. 개혁으로 인하여 생기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동일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 익스포저(exposure)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체 지표 이자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이 특정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BC6.549 IASB는 IFRS 9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회계처리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생긴 기간에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특정 미래전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위험회피관계를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중단하게 될 수 있다. 또한 IFRS 9와

3)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IAS 39를 적용할 때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BC6.550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기 전에, 그러한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IFRS 9와 IAS 39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2019년 공개초안)을 2019년 5월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BC6.551 2019년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회피대상위험과(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 개혁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제안된 예외규정은 공개초안에서 특정하는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만 적용되며, 개혁으로 인하여 모든 결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BC6.552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전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문제가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대체 지표 이자율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 데 이미 분명한 진전이 있는 일부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BC6.553 2019년 9월,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을 개정하였다. 2019년 9월에 발표한 개정에서 IASB는 IFRS 9에 문단 6.8.1~6.8.12와 7.1.8을 추가하였고 IFRS 9의 문단 7.2.26을 개정하였다.

BC6.554 IASB는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IFRS 9 뿐만 아니라 IAS 39의 개정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상당수의 IFRS 재무제표작성자(특히 금융기관)가 그러한 회계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BC6.555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이슈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제안된 예외규정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자율 위험의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 외화위험과 이자율위험 모두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지정하는 위험회피관계처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 밖의 다른 위험회피관계 유형은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포함하려고 했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C6.556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재심의 과정에서 이자율 위험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로 개정의 적용범위를 국한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많은 파생상품이 개혁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가 개혁에 의해 야기된 시장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은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BC6.557 결과적으로,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언급하기 위해 IFRS 9의 문단 6.8.1의 문구를 명확히 하였다. IFRS 9의 문단 6.8.1에 따르면, 개혁으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자율 위험이 유일한 회피대상위험이 아닌 위험회피관계를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

BC6.558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 IFRS 9의 문단 6.3.3을 적용하려면 그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것(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요구사항은 예상거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다. IASB는 IFRS 9의 해당 요구사항이 개혁의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더 이상 매우 크지 않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단 BC6.55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BC6.559 따라서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면제를 주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자 IFRS 9를 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개혁으로 영향을 받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다면, 미래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에 기초한다면, 그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평가할 때, IFRS 9의 문단 6.8.4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미래의 계약에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를 참조하는 채무상품의 향후 발행에 대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LIBOR 지표 이자율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BC6.560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반드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6.559에서 기술한 예에서,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판단할 때, 개혁의 결과로 미래 계약의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 밖의 이유로 채무상품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은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예외규정이 다르게 가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기업은 LIBOR에 기초한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BC6.561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예외규정도 포함하였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아 있

는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같은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아 있는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IFRS 9의 문단 6.5.11(4)(다)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평가

BC6.562 IFRS 9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BC6.563 이러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 필요하다. 개혁의 시점 이후에도 존재할 수도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이자율지표 개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계속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가능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단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BC6.564 IASB는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게 된다면 발생하게 될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고 문단 BC6.550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이유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FRS 9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6.565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IFRS 9의 문단 6.4.1(3)(가)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BC6.566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외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만을 다룬다. 따라서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IFRS 9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비효과성의 측정

BC6.567 IASB는 예외규정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6.568 또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예외는 재무제표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IFRS 13 '공정가

치 측정'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들을 사용하여 계속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C6.569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IFRS 9에서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파악하고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과 관련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회피대상위험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 대출의 IBOR 요소와 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위험요소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측정에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BC6.570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현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의 중요한 조건이 일치하는 조건을 갖는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가상의 파생상품'이라고 불린다). IASB가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에 적용되는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 후의 현금흐름이 영(0)이 된다고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은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즉, 가상의 파생상품이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 시장기준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실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

BC6.571 IASB는 IFRS 9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 또는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3개월 LIBOR+1%의 이자를 부담하는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은 전체 채무상품(즉, 모든 현금흐름) 또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3개월 LIBOR 위험요소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FRS 9 문단 6.3.7⑴에서는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특정 위험이나 위험들(위험요소)에 따른 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6.572 IASB는 이자율지표가 IFRS 9 문단 6.3.7⑴에 따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개혁의 결과가 이자율지표의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LIBOR 구성요소가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지, 따라서 위험회피관계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지에 대한 기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SB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하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요소(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BC6.573 문단 BC6.550에 기술된 이유로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혁의 결과로 위험요소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도록 IFRS 9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BC6.574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본다. IASB는 그러한 상황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요구사항을 충족한 위험요소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계속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BC6.575 뿐만 아니라, IASB는 위험요소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제안하지 않았다. 문단 BC6.56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BC6.576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한 2019년 공개초안의 예외규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예외규정이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상응하는 완화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모두 자주 변경된다(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한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 기업들은 익스포저를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재지정한다. 위험회피관계의 각각의 재지정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면(여전히 동일한 위험회피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재지정의 모든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6.572에 기술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이것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여전히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여전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라고 기업이 결론내릴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C6.577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예외규정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그 요구사항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외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당초 제공한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다.

BC6.578 따라서 IASB는 위험요소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제안을 확정하였다. 또 IASB는 문단 BC6.576에 기술된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모두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회피 문서화와 일관되게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하는 위험회피관계를 위해 IFRS 9의 문단 6.8.8에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을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다.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하는 때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BC6.579 IFRS 9의 문단 6.8.8의 예외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IASB는 IFRS 9의 문단 B6.5.24(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동적인 절차를 사용하고 변동금리대출금의 LIBOR 위험요소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는 예를 고려하였다.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기업은 LIBOR가 위험회피관계 내에 지정된 모든 대여금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를 평가한다. 새로운 대여금의 발생과 기존 대여금의 만기도래 또는 상환에 따라 위험 포지션을 갱신할 때 위험회피관계는 '구'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업데이트된 금액에 대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재지정함으로써 조정한다. IFRS 9의 문단 6.8.8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관계에 추가된 새로운 대여금에 대해서만 LIBOR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재지정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재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의무적용

BC6.580 IASB는 IFRS 9의 제6.8절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해당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 적용해야 하며 IFRS 9 문단 6.8.9~6.8.1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을 중단해야 할 때까지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6.581 IASB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선별적으로 중단하거나 종전에 중단되었던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재분류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예외규정에서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및 위험회

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므로 예외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원가를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BC6.582 또 IASB는 일부 상황에서 IFRS 9의 제6.8절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개혁이나 대체 대상이 아닌 특정 이자율지표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은 없다. IFRS 9의 제6.8절에 명시된 예외규정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BC6.583 또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예외규정은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모든 면이 아닌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LIBOR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위험회피관계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IFRS 9의 문단 6.8.4와 6.8.6의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IFRS 9의 문단 6.8.6의 예외규정은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의 지정을 수반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적용 종료

BC6.584 문단 BC6.550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는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변경되는 시기,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되는 시기(이하 '시기'로 통칭함),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이 재설정 빈도를 포함하여 어

떻게 될 것인지,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간 스프레드 조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이하 '금액'으로 통칭함)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관련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회계의 특정 부분을 다루기 위해 IFRS 9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IFRS 9의 제6.8절에 제시된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C6.585 IASB는 예외규정에 대해 명시적인 종료일을 제공할지를 고려하였으나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시장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일정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계약은 서로 다른 시기에 수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BC6.586 IASB는 (1) (특정 예외규정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와 (2) 위험회피관계의 중단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4] 예외규정에서는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특정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예외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시점부터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IFRS 9의 모든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C6.587 IASB는 이자율지표의 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려면 일반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또한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을 특정하기 위해 당초 계약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일부의 경우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실제로 변경하지 않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4)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IFRS 9 문단 6.8.5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서는 (1) 위에서 기술된 때와 (2)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전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IFRS 9 문단 6.8.10 참조).

참조를 포함하도록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을 없애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요구사항의 적용이 적절히 종료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시나리오들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모든 상황을 망라하지는 못하며 개혁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BC6.588 시나리오 A: (1)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되는 날짜와 (2)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할 때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다.

BC6.589 시나리오 B: 개정된 계약의 관련 조항에서 개혁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은 발생할 것이라고 명시하지만 이자율지표가 대체되는 날짜나 수정된 현금흐름이 기초할 대체 지표 이자율을 특정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하더라도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BC6.590 시나리오 C: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특정하는 조건이 미래 어느 시점에 중앙 기관(central authority)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러한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이 계약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은 이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 모두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앙 기관이 지표 이자율의 대체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와 대체 지표 이자율 및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할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BC6.591 시나리오 D: 개혁을 예측하여 지표 이자율이 대체될 날짜와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될 날짜를 특정하는 조항이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개정으로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이나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명시되지는 않는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BC6.592 시나리오 E: 개혁을 예측하여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되 계약의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BC6.593 시나리오 F: 개혁에 대비하여, 이자율지표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 기관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를 수행한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현행 이자율지표의 발표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다. 중앙 기관은 개혁의 일환으로 예비 지표 이자율을 도입하고, 예비 지표 이자율과 현행 이자율지표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고정된 스프레드 조정을 결정한다. 예비 지표 이자율(중앙 기관이 결정한 고정 스프레드 조정을 포함함)은 개혁을 진행해 가는 과정의 중간 조치에 해당하지만 대체 지표 이자율(또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기간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BC6.594 문단 BC6.583에서 기술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IASB는 단일 위험회피관계에서 특정 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은 서로 다른 시점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이 그 시장의 모든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시장 협약을 통해 후속적으로 변경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게 됨으로써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근거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관련 예외규정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계속 적용되지만 위험회피수단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5)]

BC6.595 IASB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도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없어진 위험회피관계의 요소들에 대한 실제 특성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IASB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일부 요소라도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한 예외규정이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려하였다. IASB는 그렇게 하는 것은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것은 IFRS 9의 문단 6.8.4~6.8.12의 예외규정과 IFRS 9의 각각의 요구사항이 위험회피관계의 동일한 요소에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각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C6.596 IASB는 요구사항 적용의 종료가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9에서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거래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예상거래를 식별하여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기업이 미래에 발행할 LIBOR에 기초한 채무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지정 시점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위험회피 문서화는 LIBOR를 분명하게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5) 이 시나리오에서는 먼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의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IASB는 이 과제의 다음 단계(대체 단계)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금융상품의 실제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6.597 또한 IASB는 IFRS 9 문단 6.8.7과 6.8.8에서 제시된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는 적용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이자율지표가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모든 다른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 계속 충족된다고 가정). 만약 IASB가 예외규정의 종료일을 포함하였다면, 어느 시점(예: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형성)에는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근거한 요소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에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 종료를 계약 변경에 연결 지을 경우 IASB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의에 따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는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그 결과 이러한 계약은 개혁 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가 IFRS 9를 적용할 경우 중단될 때에만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6.598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 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결합에 대하여 제안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지를 평가할 때, 이 의견제출자들은 그 평가가 개별기준으로(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집합 기준으로(즉,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모두 또는 결합에 포함된 금융상품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집합 내

의 모든 항목 또는 결합 내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BC6.599 결과적으로, IASB는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회피대상위험과(또는) 그 항목 또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개별 기준으로 (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 시점을 평가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IFRS 9 문단 6.8.12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BC6.600 IASB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BC6.601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예외규정이 소급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지정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허용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예외규정의 소급적용으로 기업이 이전에 지정했고 IFRS 9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는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BC6.602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소급적용의 명확성에 대해 언급하고 기준서에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그 요구사항들을 처음으로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위험회피관계나 그 후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그 요구사항들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에만 소급적용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의 문단을 개정하였다. IASB는 보고기간이 연차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BC6.603 IASB는 이 개정사항들이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IFRS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특정한 경과규정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222 다음에, 새로운 제목 및 문단 BC223~BC288이 추가되었다.

위험회피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BC223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이자율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생상품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이자율지표는 수조 달러와 그 밖의 통화들을 지수화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은행간 무담보 자금조달 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일부 이자율지표의 시장 조작 시도 사례는 일부 이자율지표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주요 이자율지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검토 후, 은행간 대출금리와 같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거래 데이터에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기준금리)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에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이는 결국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고서 '주요 이

자율지표 개혁'(개혁)[6]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BC224 2018년에 IASB는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대체 전 이슈'라고 함)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BC225 대체 전 이슈의 일부로서, IASB는 미래전망 분석을 요구하는 IFRS 9와 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개혁에 따라, 현재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그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때 변경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은 계약상 특정된 현금흐름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현금흐름 모두를 포함한다. 개혁으로 인하여 생기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동일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 익스포저(exposure)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체 지표 이자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이 특정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BC226 IASB는 IFRS 9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회계처리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생긴 기간에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특정 미래전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위험회피관계를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중단하게 될 수 있다. 또한 IFRS 9와

6)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IAS 39를 적용할 때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BC227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기 전에, 그러한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IFRS 9와 IAS 39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2019년 공개초안)을 2019년 5월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BC228 2019년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회피대상위험과(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 개혁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제안된 예외규정은 공개초안에서 특정하는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만 적용되며, 개혁으로 인하여 모든 결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BC229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전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문제가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대체 지표 이자율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 데 이미 분명한 진전이 있는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BC230 2019년 9월,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을 개정하였다. 2019년 9월에 발표한 개정에서 IASB는 IAS 39에 문단 102A~102N과 108G를 추가하였다.

BC231 IASB는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IFRS 9 뿐만 아니라 IAS 39의 개정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상당수의 IFRS 재무제표작성자(특히 금융기관)가 그러한 회계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BC232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이슈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제안된 예외규정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자율 위험의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 외화위험과 이자율위험 모두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지정하는 위험회피관계처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 밖의 다른 위험회피관계 유형은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포함하려고 했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C233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재심의 과정에서 이자율 위험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로 개정의 적용범위를 국한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많은 파생상품이 개혁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가 개혁에 의해 야기된 시장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것

이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은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BC234 결과적으로,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언급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102A의 문구를 명확히 하였다. IAS 39의 문단 102A에 따르면, 개혁으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자율 위험이 유일한 회피대상위험이 아닌 위험회피관계를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

BC235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 IAS 39의 문단 88(3)을 적용하려면 그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것(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요구사항은 예상거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다. IASB는 IAS 39의 해당 요구사항이 개혁의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더 이상 매우 크지 않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단 BC227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BC236 따라서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면제를 주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자 IAS 39를 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개혁으로 영향을 받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다면, 미래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에 기초한다면, 그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때, IAS 39의 문단 102D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미래의 계약에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를 참조하는 채무상품의 향후 발행에 대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LIBOR 기준금리는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BC237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반드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36에서 기술한 예에서,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판단할 때, 개혁의 결과로 미래 계약의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 밖의 이유로 채무상품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은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예외규정이 다르게 가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기업은 LIBOR에 기초한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BC238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예외규정도 포함하였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기타포괄손익에 남아 있는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같은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것이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타포괄손익에 남아 있는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IAS 39의 문단 97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효과성 평가

BC239 IAS 39를 적용하는 경우,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문단의 조건 중 두 가지, 전진적 평가와 소급적 평가에서는 위험회피관계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문단 91(2)와 101(2)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전진적 평가

BC240 IAS 39 문단 88(2)를 적용할 때,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 필요하다. 개혁의 시점 이후에도 존재할 수도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이자율지표 개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가능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단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IAS 39 문단 88(2)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BC241 IASB는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잠재적으로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고

문단 BC227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이유로 전진적인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AS 39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242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IAS 39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가 상쇄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전진적 평가를 수행한다.

BC243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외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만을 다룬다. 따라서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IAS 39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BC244 2019년 공개초안을 개발할 때, IASB는 개혁의 영향을 고려하여 문단 88(5)와 AG105(2)에서 요구하는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제안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공개초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평가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 손익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상쇄하는 정도에 기초하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에 근거한다. IASB는 현행 IFRS 기준서가 이미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45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제안하지 않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평가와 이것이 전진적 평가와 소급적 평가 모두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내재적 상호작용 때

문에,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이 제공되지 않는 한 제안된 개정안은 의도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BC246 뿐만 아니라, 이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으로 인한 일시적인 비효과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가 IAS 39 문단 AG105⑵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기업의 위험관리 전략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BC247 IAS 39의 개정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수렴한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위해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BC248 IASB는 한 가지 가능한 접근법이 전진적 평가와 비슷하게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적 효과성 평가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과 분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IASB는 이 접근법의 목적은 위험회피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것이며, 실제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치가 80~125%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 평가 결과가 기업회계기준서 IAS 39 문단 AG105⑵에서 요구하는 같이 80~125% 범위 내에 있을 때 위험회피회계는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IASB는 이 접근법이 IAS 39의 개정에서 제시하는 다른 예외규정과 일관되더라도 서로 다른 가정에 기초하여 두 가지의 효과성 계산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작성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BC249 또한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들이 권고한 접근법을 고려하였는데, 이 접근법에 따르면 기업은 소급적 평가를 위하여 IFRS 9의 요구사항과 유사하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

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과 관련된 IFRS 9의 요구사항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IFRS 9의 문단 6.4.1(3)의 요구사항들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관계를 단독으로 적용할 경우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BC250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IAS 39 문단 AG105(2)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효과적인 부분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 밖의 원인에서 발생하고 전진적 평가(IAS 39 문단 102F에서 개정)를 포함하여 IAS 39 문단 88의 다른 조건들은 충족된다면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을 결정하였다.

BC251 IASB는 개혁 이외의 이유로 소급적 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게 되는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가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그러한 접근법이 문단 BC248에 기술한 접근법에 비해 덜 원칙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이 전진적 평가를 통하여 IAS 39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적용과 관련한 원칙의 일정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작성자에게 추가적인 원가나 부담을 부여하지도 않고 IAS 39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52 IASB는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은 개혁으로 인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 잘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의 집합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게 되는 위험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만 해당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전진적 평가에 의해 경감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험회피가 미래 기간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평가에

또 다른 비효과성의 원인이 계속 포함될 것이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비효과성은 전진적 평가에 의해 포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모든 비효과적인 부분은 재무보고에 인식되고 측정되므로 투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IAS 39 문단 AG105(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IAS 39 문단 88(5)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BC253 IASB는 예외규정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54 또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예외는 재무제표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들을 사용하여 계속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C255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IAS 39에서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파악하고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과 관련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회피대상위험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 대출의 IBOR 요소와 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위험요소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측정에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BC256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현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의 중요한 조건이 일치하는 조건을 갖는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가상의 파생상품'이라고 불린다). IASB가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에 적용되는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 후의 현금흐름이 영(0)이 된다고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은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즉, 가상의 파생상품이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 시장기준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실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BC257 IASB는 IAS 39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 또는 항목의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3개월 LIBOR+1%의 이자를 부담하는 5년 만기 변동금

리부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은 전체 채무상품(즉, 모든 현금흐름) 또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3개월 LIBOR 부분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AS 39의 문단 81과 AG99F에서는 지정된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특정 위험이나 위험들(지정된 부분)에 따른 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258 IASB는 이자율지표가 IAS 39 문단 81에 따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부분이라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개혁의 결과가 이자율지표의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LIBOR 부분이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지, 따라서 위험회피관계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지에 대한 기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SB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하는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에 내재된 그러한 지정된 부분(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BC259 문단 BC227에 기술된 이유로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혁의 결과로 지정된 부분이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도록 IAS 39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부분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BC260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지정된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확대하

지는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본다. IASB는 그러한 상황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요구사항을 충족한 지정된 부분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계속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BC261 뿐만 아니라, IASB는 지정된 부분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제안하지 않았다. 문단 BC24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BC262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한 2019년 공개초안의 예외규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예외규정이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상응하는 완화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모두 자주 변경된다(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한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 기업들은 익스포저를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재지정한다. 위험회피관계의 각각의 재지정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면(여전히 동일한 위험회피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재지정의 모든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258에 기술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이것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여전히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여전히 적용조건을 충족하

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라고 기업이 결론내릴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C263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예외규정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지정된 부분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그 요구사항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외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당초 제공한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다.

BC264 따라서 IASB는 지정된 부분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제안을 확정하였다. 또 IASB는 문단 BC262에 기술된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모두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회피 문서화와 일관되게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하는 위험회피관계를 위해 IAS 39의 문단 102I에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을 적용하여 지정된 부분을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하는 때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BC265 IAS 39의 문단 102I의 예외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IASB는 IAS 39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변동금리대출금의 LIBOR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는 예를 고려하였다.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기업은 LIBOR가 위험회피관계 내에 지정된 모든 대여금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부분인지를 평가한다. 새로운 대여금의 발생과 기존 대여금의 만기도래 또는 상환에 따라 위험 포지션을 갱신할 때 위험회피관계는 '구'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업데이트된 금액에 대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재지정함으로써 조정한다. IAS 39의 문단 102I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관계에 추가된 새로운 대여금에 대해서만

LIBOR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부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재지정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재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BC266 IASB는 IAS 39의 102D~102N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해당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 적용해야 하며 IAS 39 문단 102J~102N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을 중단해야 할 때까지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67 IASB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선별적으로 중단하거나 종전에 중단되었던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재분류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예외규정에서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및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므로 예외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원가가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BC268 또 IASB는 일부 상황에서 IAS 39의 문단102D~102N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개혁이나 대체 대상이 아닌 특정 이자율지표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은 없다. IAS 39의 문단 102D~102N에 명시된 예외규정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BC269 또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예외규정은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모든 면이 아닌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LIBOR에 기

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위험회피관계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IAS 39의 문단 102D와 102F의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IAS 39의 문단 102F의 예외규정은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지정된 부분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부분의 지정을 수반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적용 종료

BC270 문단 BC227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는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변경되는 시기,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되는 시기(이하 '시기'로 통칭함)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이 재설정 빈도를 포함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간 스프레드 조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이하 '금액'으로 통칭함)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관련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회계의 특정 부분을 다루기 위해 IAS 39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IAS 39의 문단 102D~102N에 제시된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C271 IASB는 예외규정에 대해 명시적인 종료일을 제공할지를 고려하였으나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시장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일정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계약은 서로 다른 시기에 수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BC272 IASB는 ⑴ (특정 예외규정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와 ⑵ 위험회

피관계의 중단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7] 예외규정에서는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특정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예외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시점부터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IAS 39의 모든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C273 IASB는 이자율지표의 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려면 일반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또한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을 특정하기 위해 당초 계약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일부의 경우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실제로 변경하지 않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도록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을 없애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요구사항의 적용이 적절히 종료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시나리오들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모든 상황을 망라하지는 못하며 개혁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BC274 시나리오 A: (1)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되는 날짜와 (2)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할 때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다.

7)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IAS 39 문단 102E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서는 (1) 위에서 기술된 때와 (2)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해 온 전체 금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IAS 39 문단 102K를 참조).

BC275 시나리오 B: 개정된 계약의 관련 조항에서 개혁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은 발생할 것이라고 명시하지만 이자율지표가 대체되는 날짜나 수정된 현금흐름이 기초할 대체 지표 이자율을 특정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하더라도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BC276 시나리오 C: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특정하는 조건이 미래 어느 시점에 중앙 기관(central authority)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러한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 계약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은 이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 모두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앙 기관이 지표 이자율의 대체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와 대체 지표 이자율 및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할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BC277 시나리오 D: 개혁을 예측하여 지표 이자율이 대체될 날짜와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될 날짜를 특정하는 조항이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개정으로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이나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명시되지는 않는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BC278 시나리오 E: 개혁을 예측하여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되 계약의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BC279 시나리오 F: 개혁에 대비하여, 이자율지표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 기관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를 수행한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현행 이자율지표의 발표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다. 중앙 기관은 개혁의 일환으로 예비 지표 이자율을 도입하고, 예비 지표 이자율과 현행 이자율지표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고정된 스프레드 조정을 결정한다. 예비 지표 이자율(중앙 기관이 결정한 고정 스프레드 조정을 포함함)은 개혁을 진행해 가는 과정의 중간 조치에 해당하지만 대체 지표 이자율(또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기간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BC280 문단 BC269에서 기술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IASB는 단일 위험회피관계에서 특정 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은 서로 다른 시점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이 그 시장의 모든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시장 협약을 통해 후속적으로 변경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게 됨으로써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근거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관련 예외규정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계속 적용되지만 위험회피수단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8)]

BC281 IASB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도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없어진 위험회피관계의 요소들에 대한 실제 특성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IASB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일부 요소라도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한 예외규정이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려하였다. IASB는 그렇게 하는 것

8) 이 시나리오에서는 먼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의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IASB는 이 과제의 다음 단계(대체 단계)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금융상품의 실제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은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것은 IAS 39의 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과 IAS 39의 각각의 요구사항이 위험회피관계의 동일한 요소에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각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C282 IASB는 요구사항 적용의 종료가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IAS 39에서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거래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예상거래를 식별하여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기업이 미래에 발행할 LIBOR에 기초한 채무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지정 시점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위험회피 문서화는 LIBOR를 분명하게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BC283 또한 IASB는 IAS 39 문단 102H와 102I에서 제시된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는 적용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이자율지표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모든 다른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 계속 충족된다고 가정). 만약 IASB가 예외규정의 종료일을 포함하였다면, 어느 시점(예: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형성)에는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근거한 지정된 부분이 더 이상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에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 종료를 계약 변경에 연결 지을 경우 IASB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의에 따

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지정된 부분은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그 결과 이러한 계약은 개혁 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가 IAS 39를 적용할 경우 중단될 때에만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84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 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결합에 대하여 제안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지를 평가할 때, 이 의견제출자들은 그 평가가 개별기준으로(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집합 기준으로(즉,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모두 또는 결합에 포함된 금융상품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집합 내의 모든 항목 또는 결합 내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BC285 결과적으로, IASB는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회피대상위험과 (또는) 그 항목 또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개별 기준으로 (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 시점을 평가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IAS 39 문단 102N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BC286 IASB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BC287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예외규정이 소급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지정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허용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예외규정의 소급적용으로 기업이 이전에 지정했고 IAS 39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는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BC288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소급적용의 명확성에 대해 언급하고 기준서에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그 개정사항들을 처음으로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위험회피관계나 그 후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그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손익에만 소급적용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의 문단을 개정하였다. IASB는 보고기간이 연차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35SS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 및 문단 BC35TT~BC35CCC가 추가되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BC35TT 2019년 5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이전 기간에 대하여 완화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FRS 9와 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019년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2019년 9월 IFRS 9와 IAS 39의 최종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546~BC6.603과 IAS 3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23~BC288은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제공한다.

BC35UU 2019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예외규정을 적용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에 대한 공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FRS 7에서 이미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일부 식별된 특정 공시사항과 관련하여 제안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에 관해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IFRS 7의 문단 24A(1), 24A(3)~(4), 24B(1)(가)~(나), 24B(1)(라) 및 24B(2)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BC35VV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이 재무제표이용자의 기대 효익과 재무제표

작성자의 기대 원가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하여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이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BC35WW 또 재무제표이용자들은 IFRS 9와 IAS 39의 개정안이 의무 적용사항이므로 기업의 위험회피관계가 어느 정도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IASB에 말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개정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으며,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공시는 기업의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BC35XX 의견제출자들의 외부검토의견과 재무제표이용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IFRS 7 문단 24H의 공시사항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35YY IASB는 IFRS 7 문단 24H(4)의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IFRS 9와 IAS 39의 개정의 목적과 구체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데 추가적인 가정이나 판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예외규정은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 개정사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적인 가정이나 판단을 한다면(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공시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정사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이나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35ZZ IASB는 IFRS 7 문단 24H(5)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문단에서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을 공시하여 순액기준(자산 포지션의 위험회피수단과 부채 포지션의 위험회피수단을 상계)이 아닌 총액기준으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35AAA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28(6)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 문단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 기간에 대하여 IFRS(또는 IFRS의 개정)를 최초로 적용할 때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35BBB 이 의견제출자들은 IFRS 9와 IAS 39의 개정에 대하여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재무제표작성자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이 시스템을 병행하여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오로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IFRS 9 문단 BC6.550과 IAS 39 문단 BC227에 기술된 IASB의 판단과 일관되지 않는다.

BC35CCC IASB는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동의하였고 IFRS 9와 IAS 39의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대해서는 IAS 8 문단 28(6)의 요구사항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안 영·한 대비표

영문	개정안
Amendments to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Paragraphs 6.8.1 – 6.8.12 and 7.1.8 are added. A new heading is added before paragraph 6.8.1. New subheadings are added before paragraphs 6.8.4, 6.8.5, 6.8.6, 6.8.7 and 6.8.9. These paragraphs have not been underlined for ease of reading. Paragraph 7.2.26 is amended. New text in this paragraph is underlined.	문단 6.8.1~6.8.12와 7.1.8을 추가하였다. 문단 6.8.1 앞에 새로운 제목을 추가하였다. 문단 6.8.4, 6.8.5, 6.8.6, 6.8.7과 6.8.9 앞에 새로운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7.2.26을 개정하였다. 이 문단에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Chapter 6 Hedge accounting	**제6장 위험회피회계**
6.8 Temporary exceptions from applying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제6.8절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6.8.1 An entity shall apply paragraphs 6.8.4 – 6.8.12 and paragraphs 7.1.8 and 7.2.26(d) to all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These paragraphs apply only to such hedging relationships. A hedging relationship is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only if the reform gives rise to uncertainties about: (a) the interest rate benchmark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designated as a hedged risk; and/or (b) the timing or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or of the hedging instrument.	6.8.1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6.8.4~6.8.12, 문단 7.1.8과 7.2.26⑷를 적용한다. 이 문단들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한다. 개혁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위험회계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⑴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
6.8.2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aragraphs 6.8.4 – 6.8.12, the ter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refers to the market-wid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ncluding the replacement of an	6.8.2 문단 6.8.4~6.8.12의 적용 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에 제시된 권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such as that resulting from the recommendations set out in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s July 2014 report 'Reforming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 The report, 'Reforming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is available at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	*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6.8.3 Paragraphs 6.8.4 – 6.8.12 provide exceptions only to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se paragraphs. An entity shall continue to apply all other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to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6.8.3 문단 6.8.4~6.8.12는 동 문단에 특정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계속 적용한다.
Highly probable requirement for cash flow hedges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
6.8.4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a forecast transaction (or a component thereof) is highly probable as required by paragraph 6.3.3, an entity shall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6.8.4 문단 6.3.3에 따라 예상거래(또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Reclassifying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의 재분류**
6.8.5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6.5.12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expected to occur, an entity shall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contractually or	6.8.5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6.5.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non-contractually specified)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ssessing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평가**	
6.8.6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6.4.1(c)(i) and B6.4.4 – B6.4.6, an entity shall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nd/or the hedged risk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are based, or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6.8.6	문단 6.4.1(3)(가)와 B6.4.4~B6.4.6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Designating a component of an item as a hedged item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6.8.7	Unless paragraph 6.8.8 applies, for a hedge of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benchmark component of interest rate risk, an entity shall apply the requirement in paragraphs 6.3.7(a) and B6.3.8－that the risk component shall be separately identifiable－only at the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6.8.7	문단 6.8.8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문단 6.3.7(1)과 B6.3.8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6.8.8	When an entity, consistent with its hedge documentation, frequently resets (ie discontinues and restarts) a hedging relationship because both the hedging instrument and the hedged item frequently change (ie the entity uses a dynamic process in which both the hedged items and the hedging instruments used to manage that exposure do not remain the same for long), the entity shall apply the requirement in paragraphs 6.3.7(a) and B6.3.8－	6.8.8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회피에 대한 문서화와 일관되도록 자주 위험회피관계를 재설정(즉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즉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문단 6.3.7(1)과 B6.3.8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위험회

	that the risk component is separately identifiable－only when it initially designates a hedged item in that hedging relationship. A hedged item that has been assessed at the time of its initial designation in the hedging relationship, whether it was at the time of the hedge inception or subsequently, is not reassessed at any subsequent redesignation in the same hedging relationship.		피관계의 최초 지정시점에 평가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이든 후속적으로든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 시 재평가하지 않는다.
End of application		**적용 종료**	
6.8.9	An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 6.8.4 to a hedged item at the earlier of: (a)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d (b)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that the hedged item is part of is discontinued.	6.8.9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문단 6.8.4를 적용하는 것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6.8.10	An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 6.8.5 at the earlier of: (a)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future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d (b) when the entir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with respect to that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has been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6.8.10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문단 6.8.5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전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6.8.11	An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 6.8.6:	6.8.11	다음 ⑴과 ⑵에 문단 6.8.6의 적용을 각각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a) to a hedged item,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hedged risk or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d (b) to a hedging instrument,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If the hedging relationship that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are part of is discontinued earlier than the date specified in paragraph 6.8.11(a) or the date specified in paragraph 6.8.11(b), the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 6.8.6 to that hedging relationship at the date of discontinuation.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위험회피수단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만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문단 6.8.11⑴에 명시된 때나 6.8.11⑵에 명시된 때보다 더 먼저 중단된다면 중단시점에 해당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6.8.6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6.8.12	When designating a group of items as the hedged item, or a combin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s the hedging instrument, an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s 6.8.4 – 6.8.6 to an individual item or financial instru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6.8.9, 6.8.10, or 6.8.11, as relevant,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hedged risk and/or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at item or financial instrument.	6.8.12	항목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 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회피대상위험과(또는) 해당 항목이나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관련된 문단 6.8.9, 6.8.10 또는 6.8.11에 따라 개별 항목이나 금융상품에 문단 6.8.4~6.8.6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Chapter 7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제7장 시행일과 경과규정
7.1 Effective date	**제7.1절 시행일**
7.1.8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which amended IFRS 9, IAS 39 and IFRS 7, issued in September 2019, added Section 6.8 and amended paragraph 7.2.26.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for annual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0.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e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7.1.8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및 제1107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3월 공표)에 따라 제6.8절이 추가되었고 문단 7.2.26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7.2 Transition	**제7.2절 경과규정**
Transition for hedge accounting (Chapter 6)	**위험회피회계(제6장)에 대한 경과규정**
7.2.26 As an exception to p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of this Standard, an entity: ... (d) shall apply the requirements in Section 6.8 retrospectively. This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lies only to those hedging relationships that existed at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ose requirements or were designated thereafter, and to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flow hedge reserve that existed at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ose requirements.	7.2.26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전진 적용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4) 제6.8절의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6.8절의 요구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나 그 이후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제6.8절의 요구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에만 소급적용한다.
Amendments to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
Paragraphs 102A – 102N and 108G are added. A new heading is added before	

paragraph 102A. New subheadings are added before paragraphs 102D, 102E, 102F, 102H and 102J. These paragraphs have not been underlined for ease of reading.	문단 102A~102N과 108G를 추가하였다. 문단 102A 앞에 새로운 제목을 추가하였다. 문단 102D, 102E, 102F, 102H와 102J 앞에 새로운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Hedging	**위험회피**
Temporary exceptions from applying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
102A An entity shall apply paragraphs 102D – 102N and 108G to all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These paragraphs apply only to such hedging relationships. A hedging relationship is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only if the reform gives rise to uncertainties about: (a) the interest rate benchmark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designated as a hedged risk; and/or (b) the timing or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or of the hedging instrument.	102A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D~102N과 108G를 적용한다. 이 문단들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한다. 개혁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1)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
102B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aragraphs 102D – 102N, the ter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refers to the market-wid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ncluding the replacement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such as that resulting from the recommendations set out in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s July 2014 report 'Reforming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 The report, 'Reforming Major Interest	102B 문단 102D~102N의 적용 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Rate Benchmarks', is available at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102C Paragraphs 102D – 102N provide exceptions only to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se paragraphs. An entity shall continue to apply all other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to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102C 문단 102D~102N은 동 문단에 특정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제공한다. 그 밖의 모든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계속 적용한다.
Highly probable requirement for cash flow hedges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
102D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88(c) that a forecast transaction must be highly probable, an entity shall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102D 문단 88(3)에 따라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결정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Reclassifying the cumulative gain or loss recognis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재분류**
102E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101(c)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forecast transaction is no longer expected to occur, an entity shall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102E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문단 101(3)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Effectiveness assessment	**효과성 평가**
102F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s 88(b) and AG105(a), an entity shall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nd/or the hedged risk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102F 문단 88(2)와 AG105(1)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

	specified) are based, or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02G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88(e),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discontinue a hedging relationship because the actual results of the hedge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AG105(b). For the avoidance of doubt, an entity shall apply the other conditions in paragraph 88, including the prospective assessment in paragraph 88(b), to assess whether the hedging relationship must be discontinued.	102G	문단 88(5)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문단 AG105(2)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문단 88(2)의 전진적 평가를 포함한 문단 88의 그 밖의 조건을 적용한다.
Designating financial items as hedged items		**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102H	Unless paragraph 102I applies, for a hedge of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benchmark portion of interest rate risk, an entity shall apply the requirement in paragraphs 81 and AG99F－that the designated portion shall be separately identifiable－only at the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102H	문단 102I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위험의 지표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문단 81과 AG99F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102I	When an entity, consistent with its hedge documentation, frequently resets (ie discontinues and restarts) a hedging relationship because both the hedging instrument and the hedged item frequently change (ie the entity uses a dynamic process in which both the hedged items and the hedging instruments used to manage that exposure do not remain the same for long), the entity shall apply the requirement in paragraphs 81 and AG99F－that the designated portion is separately identifiable－only when it initially	102I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회피에 대한 문서화와 일관되도록 자주 위험회피관계를 재설정(즉 중단하고 재시작)하는 경우(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최초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문단 81과 AG99F의 요구사항(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위험회피관계의 최초 지정시점에 평가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의

	designates a hedged item in that hedging relationship. A hedged item that has been assessed at the time of its initial designation in the hedging relationship, whether it was at the time of the hedge inception or subsequently, is not reassessed at any subsequent redesignation in the same hedging relationship.		개시시점이든 후속적으로든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시 재평가하지 않는다.
End of application		**적용 종료**	
102J	An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 102D to a hedged item at the earlier of: (a)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d (b)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that the hedged item is part of is discontinued.	102J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문단 102D를 적용하는 것을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1)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2)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102K	An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 102E at the earlier of: (a)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future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d (b) when the entire cumulative gain or loss recognis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with respect to that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has been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102K	다음 중 더 이른 시점에 문단 102E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1)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2)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전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102L	An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 102F: (a) to a hedged item,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102L	다음 (1)과 (2)에 문단 102F의 적용을 각각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hedged risk or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d (b) to a hedging instrument,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If the hedging relationship that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are part of is discontinued earlier than the date specified in paragraph 102L(a) or the date specified in paragraph 102L(b), the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 102F to that hedging relationship at the date of discontinuation.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이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위험회피수단의 경우,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만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속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문단 102L⑴에 명시된 때나 102L⑵에 명시된 때보다 더 먼저 중단된다면 중단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문단 102F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102M	An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 102G to a hedging relationship at the earlier of: (a)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hedged risk and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or of the hedging instrument; and (b)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to which the exception is applied is discontinued.	102M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문단 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회피대상위험과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⑵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102N	When designating a group of items as the hedged item, or a combin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102N	항목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 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자율지표

	as the hedging instrument, an entity shall prospectively cease applying paragraphs 102D – 102G to an individual item or financial instru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02J, 102K, 102L, or 102M, as relevant,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hedged risk and/or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at item or financial instrument.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회피대상 위험과(또는) 해당 항목이나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관련된 문단 102J, 102K, 102L 또는 102M에 따라 개별 항목이나 금융상품에 문단 102D~102G의 적용을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시행일과 경과규정**	
108G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which amended IFRS 9, IAS 39 and IFRS 7, issued in September 2019, added paragraphs 102A – 102N.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for annual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0.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e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retrospectively to those hedging relationships that existed at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ese amendments or were designated thereafter, and to the gain or loss recognis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that existed at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ese amendments.	108G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07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102A~102N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위험회피관계나 그 이후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이러한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한다.
Amendments to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Paragraphs 24H and 44DE – 44DF are added and a subheading is added before		문단 24H 와 44DE~44DF를 추가하였고 문단24H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	

paragraph 24H. These paragraphs have not been underlined for ease of reading.	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Hedge accounting	**위험회피회계**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24H For hedging relationships to which an entity applies the exceptions set out in paragraphs 6.8.4 – 6.8.12 of IFRS 9 or paragraphs 102D – 102N of IAS 39, an entity shall disclose: (a) the significant interest rate benchmarks to which the entity's hedging relationships are exposed; (b) the extent of the risk exposure the entity manages that is directly affected by the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c) how the entity is managing the process to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d) a description of significant assumptions or judgements the entity made in applying these paragraphs (for example, assumptions or judgements about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with respect to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and (e) the nominal amount of the hedging instruments in those hedging relationships.	24H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8.4~6.8.12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2)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 익스포저 중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정도 (3)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4) 이 문단들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에 대한 기술 (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가정과 판단) (5) 해당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시행일과 경과규정**
44DE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which amended IFRS 9, IAS 39 and IFRS 7, issued in September 2019, added paragraphs 24H and 44DF. An entity shall apply these	44DE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039호를 개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2020년 3월 공표)에 따라 문단 24H와 44DF가 추가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나 제1039호의

	amendments when it applies the amendments to IFRS 9 or IAS 39.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44DF	In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sued in September 2019, an entity is not required to present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 28(f) of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44DF	2020년 3월에 공표된 '*이자율지표 개혁*'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28(6)에 따른 정량적 공시사항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This Basis for Conclusions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FRS 9.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After paragraph BC6.545, new headings and paragraphs BC6.546 – BC6.603 are added.		문단 BC6.545 다음에 새로운 제목과 문단 BC6.546~BC6.603을 추가하였다.	
Hedge accounting (Chapter 6)		**위험회피회계 (제6장)**	
Amendments for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September 2019)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BC6.546	Interest rate benchmarks such as interbank offered rates (IB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global financial markets. These interest rate benchmarks index trillions of dollars and other currencies in a wide variety of financial products, from derivatives to residential mortgages. However, cases of attempted market manipulation of some interest rate benchmarks, together with the post-crisis decline in liquidity in interbank unsecured funding markets, have undermined confidence in the reliability and robustness of some interest rate benchmark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G20 aske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to undertake a fundamental review of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BC6.546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이자율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생상품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이자율지표는 수조 달러와 그 밖의 통화들을 지수화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은행간 무담보 자금조달 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일부 이자율지표의 시장 조작 시도 사례는 일부 이자율지표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주요 이자율지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검토 후, 은행간 대출금리와 같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일부 국가

	Following the review, the FSB published a report setting out its recommended reforms of some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such as IBORs. Public authorities in many jurisdictions have since taken steps to implement those recommendations. In some jurisdictions, there is already clear progress towards the reform of interest rate benchmarks, or the replacement of interest rate benchmarks with alternative, nearly risk-free interest rates that are based, to a greater extent, on transaction data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his has in turn led to uncertainty about the long-term viability of some interest rate benchmarks. In these amendments, the ter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refers to the market-wid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ncluding its replacement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such as that resulting from the FSB's recommendations set out in its July 2014 report 'Reforming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the reform).*		에서는 이미 많은 거래 데이터에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기준금리)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에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이는 결국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개혁)*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 The report, 'Reforming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is available at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		*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BC6.547	In 2018 the IASB noted the increasing levels of uncertainty about the long-term viability of some interest rate benchmarks and decided to address as a priority the issues affecting financial reporting in the period before the reform (referred to as	BC6.547	2018년에 IASB는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대체 전 이슈'라고 함)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pre-replacement issues).	
BC6.548 As part of the pre-replacement issues, the IASB considered the implications for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and IAS 39, which require forward-looking analysis. As a result of the reform, contractual cash flows of hedged items and hedging instruments based on an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 will likely change when that interest rate benchmark is subject to the reform－in these amendments, contractual cash flows encompass both contractually specified and non-contractually specified cash flows. The sam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future cash flows will likely affect the changes in fair value of hedged items and hedging instruments in a fair value hedge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 exposure. Until decisions are made about w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and when and how the reform will occur, including specifying its effects on particular contracts, uncertainties will exist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future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BC6.548 대체 전 이슈의 일부로서, IASB는 미래전망 분석을 요구하는 IFRS 9와 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개혁에 따라, 현재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그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때 변경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은 계약상 특정된 현금흐름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현금흐름 모두를 포함한다. 개혁으로 인하여 생기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동일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 익스포저(exposure)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체 지표 이자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이 특정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BC6.549 The IASB noted that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and IAS 39 provide a clear basis for accounting for such uncertainties. In applying these requirements, the uncertainties about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future cash flows could affect an entity's ability to meet those	BC6.549 IASB는 IFRS 9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회계처리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생긴 기간에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특정 미래전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specific forward-looking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the period when uncertainty is created by the reform. In some cases, solely due to such uncertainties, entities could be required to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for hedging relationships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for hedge accounting. Also, because of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entities may not be able to designate new hedging relationships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for hedge accounting applying IFRS 9 and IAS 39. In some cases,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would require an entity to recognise gains or losses in profit or loss.		하게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위험회피관계를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중단하게 될 수 있다. 또한 IFRS 9와 IAS 39를 적용할 때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BC6.550	In the IASB's view,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solely due to such uncertainties before the reform's economic effects on hedged items and hedging instruments are known would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the IASB decided to publish in May 2019 the Exposure Draf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2019 Exposure Draft), which proposed exceptions to IFRS 9 and IAS 39 to provide relief during this period of uncertainty.	BC6.550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기 전에, 그러한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IFRS 9와 IAS 39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2019년 공개초안)을 2019년 5월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BC6.551	The 2019 Exposure Draft proposed exceptions to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such that entities would apply those requirements assum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risk and/or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or of the hedging instrument are based is not altered	BC6.551	2019년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회피대상위험과(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 개혁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제안된 예외규정은 공개초안에서 특정하는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만 적용되

	as a result of the reform. The proposed exceptions applied only to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specified in that Exposure Draft and were not intended to provide relief from all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reform.		며, 개혁으로 인하여 모든 결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BC6.552	Almost all respondents to the 2019 Exposure Draft agreed with the IASB's decision to address pre-replacement issues. Many highlighted the urgency of these issues, especially in some jurisdictions where there is already clear progress towards the reform or replacement of interest rate benchmarks with alternative benchmark rates.	BC6.552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전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문제가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대체 지표 이자율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 데 이미 분명한 진전이 있는 일부 국가의 의견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BC6.553	In September 2019 the IASB amended IFRS 9, IAS 39 and IFRS 7 by issuing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which confirmed with modifications the proposals in the 2019 Exposure Draft. In the amendments issued in September 2019, the IASB added paragraphs 6.8.1 – 6.8.12 and 7.1.8 to IFRS 9 and amended paragraph 7.2.26 of IFRS 9.	BC6.553	2019년 9월,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을 개정하였다. 2019년 9월에 발표한 개정에서 IASB는 IFRS 9에 문단 6.8.1~6.8.12와 7.1.8을 추가하였고 IFRS 9의 문단 7.2.26을 개정하였다.
BC6.554	The IASB decided to propose amendments to IAS 39 as well as IFRS 9 because when entities first apply IFRS 9, they are permitted to choose as an accounting policy to continue to apply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of IAS 39. The IASB understands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IFRS preparers—financial institutions in particular—have made such an accounting policy choice.	BC6.554	IASB는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IFRS 9뿐만 아니라 IAS 39의 개정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상당수의 IFRS 재무제표작성자(특히 금융기관)가 그러한 회계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Scope of the exceptions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BC6.555	In the 2019 Exposure Draft, the	BC6.555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다루어

	IASB noted that the hedge accounting issues being addressed arise in the contex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nd, therefore, the proposed exceptions would apply only to hedging relationships of interest rate risk that are affected by the reform. However, some respondents expressed the view that the scope of the exceptions, as set out in the 2019 Exposure Draft, would not include other types of hedging relationships that may be affected by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such as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an entity designates cross-currency interest rate swaps to hedge its exposure to both foreign currency and interest rate risk. These respondents asked the IASB to clarify whether the scope of the exceptions was meant to include such hedging relationships.		지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이슈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제안된 예외규정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자율 위험의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 외화위험과 이자율위험 모두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지정하는 위험회피관계처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 밖의 다른 위험회피관계 유형은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를 포함하려고 했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C6.556	In its redeliberations on the 2019 Exposure Draft, the IASB clarified that it did not intend to exclude from the scope of the amendments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interest rate risk is not the only designated hedged risk. The IASB agreed with respondents that other hedging relationships could be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when the reform gives rise to uncertainties about the timing or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or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refore, the IASB confirmed that the exceptions would apply to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in	BC6.556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재심의 과정에서 이자율 위험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로 개정의 적용범위를 국한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많은 파생상품이 개혁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

these situations. The IASB noted that many derivatives, designated in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there is no uncertainty about the timing or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could be in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For example, this would be the case when the valuation of the derivatives is affected by general uncertainty in the market caused by the reform. The IASB confirmed that the exceptions do not apply to these hedging relationships, despite the indirect effect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could have on the valuation of derivatives.	였다. 예를 들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가 개혁에 의해 야기된 시장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은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BC6.557 Consequently, the IASB clarified the wording in paragraph 6.8.1 of IFRS 9 to refer to all hedging relationships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Paragraph 6.8.1 of IFRS 9 explains that a hedging relationship is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only if the reform gives rise to uncertainties abou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designated as a hedged risk and/or the timing or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or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 scope of the exceptions does not exclude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interest rate risk is not the only hedged risk.	BC6.557 결과적으로,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언급하기 위해 IFRS 9의 문단 6.8.1의 문구를 명확히 하였다. IFRS 9의 문단 6.8.1에 따르면, 개혁으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자율 위험이 유일한 회피대상위험이 아닌 위험회피관계를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Highly probable requirement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
BC6.558 The IASB noted that, if an entity designates a forecast transaction as the hedged item in a cash flow hedge, applying paragraph 6.3.3 of	BC6.558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 IFRS 9의 문단 6.3.3을 적용하려면 그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IFRS 9, that transaction must be highly probable (highly probable requirement). This requirement is intended to ensure that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designated hedging instruments are recognis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only for those hedged forecast transactions that are highly probable to occur. This requirement is an important discipline in applying hedge accounting to forecast transactions. The IASB noted that the requirements in IFRS 9 provide a clear basis to account for the effects of the reform—that is, if the effects of the reform are such that the hedged cash flows are no longer highly probable, hedge accounting should be discontinued. As set out in paragraph BC6.550, in the IASB's view, discontinuing all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s solely due to such uncertainty would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커야 한다는 것(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요구사항은 예상거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다. IASB는 IFRS 9의 해당 요구사항이 개혁의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더 이상 매우 크지 않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단 BC6.55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BC6.559	Therefore, the IASB amended IFRS 9 to provide an exception to the highly probable requirement that would provide targeted relief during this period of uncertainty. More specifically, applying the exception, if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based on an interest rate benchmark that is subject to the reform, an entity assumes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re based is not altered when assessing whether the future cash flows are highly probable. If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based on a highly probable forecast	BC6.559	따라서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면제를 주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자 IFRS 9를 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개혁으로 영향을 받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다면, 미래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에 기초한다면, 그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평가할 때, IFRS 9의 문단 6.8.4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

	transaction, by applying the exception in paragraph 6.8.4 of IFRS 9 when performing the assessment of the highly probable requirement for that forecast transaction, the entity would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re based will not be altered in the future contract as a result of the reform. For example, for a future issuance of a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referenced debt instrument, the entity would assume that the LIBOR benchmark rate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re based will not be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 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미래의 계약에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를 참조하는 채무상품의 향후 발행에 대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LIBOR 지표 이자율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BC6.560	The IASB noted that this exception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an entity determining that the hedged cash flows are highly probable. In the example described in paragraph BC6.559, the entity assumed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in the future contract would not be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when determining whether that forecast transaction is highly probable. However, if the entity decides not to issue the debt instrument because of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or for any other reason,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no longer highly probable (and are no longer expected to occur). The exception would not permit or require the entity to assume otherwise. In this case, the entity would conclude that the LIBOR-based cash flows are no longer highly probable (and are no longer expected to occur).	BC6.560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반드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6.559에서 기술한 예에서,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지를 판단할 때, 개혁의 결과로 미래 계약의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 밖의 이유로 채무상품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은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예외규정이 다르게 가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기업은 LIBOR에 기초한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BC6.561 The IASB also included an exception for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Applying this exception, any amount remaining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when a hedging relationship is discontinued would be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in the same period(s) during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ffect profit or los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If, however,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no longer expected to occur for other reasons, the entity is required to immediately reclassify to profit or loss any amount remaining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In addition, the exception would not exempt entities from reclassifying the amount that is not expected to be recovered into profit or loss as required by paragraph 6.5.11(d)(iii) of IFRS 9.	BC6.561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예외규정도 포함하였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아 있는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같은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아 있는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IFRS 9의 문단 6.5.11⑷㈐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Assessment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평가**
BC6.562 Applying IFRS 9, a hedging relationship qualifies for hedge accounting only if there is an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BC6.562 IFRS 9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BC6.563 Demonstrating the existence of an economic relationship requires the estimation of future cash flows because the assessment is prospective in nature.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could affect this assessment for hedging relationships that may extend	BC6.563 이러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이 필요하다. 개혁의 시점 이후에도 존재할 수도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이자율지표 개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

beyond the timing of the reform. That is because entities would have to consider possible changes to the fair value or future cash flows of hedged items and hedging instruments to assess whether an economic relationship continues to exist between the hedged item and hedging instrument. Consequently, at some point in time, it is possible that entities would not be able to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an economic relationship solely because of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계속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가능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단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BC6.564 The IASB considered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that would result from the potential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for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s and decided to amend the requirements in IFRS 9 to provide an exception for assessing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for the same reasons discussed in paragraph BC6.550.	BC6.564 IASB는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게 된다면 발생하게 될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고 문단 BC6.550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이유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의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FRS 9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6.565 Applying this exception, an entity shall assess whether the economic relationship as required by paragraph 6.4.1(c)(i) of IFRS 9 exist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hedged risk or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item or the hedging instrument is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Similarly, if an entity designates a highly probable forecast transaction as the hedged item, the entity shall perform the assessment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re based will	BC6.565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IFRS 9의 문단 6.4.1(3)(가)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not change as a result of the reform.	
BC6.566 The IASB noted that an offset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hedge accounting model in IFRS 9 and, therefore, the IASB considered it critical to maintain this principle. The exception addresses only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Therefore, if an entity is unable to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an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for other reasons, the entity shall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as required by IFRS 9.	BC6.566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외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만을 다룬다. 따라서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IFRS 9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Measurement of ineffectiveness	**비효과성의 측정**
BC6.567 The IASB noted that the exceptions were not intended to change the requirement that entities measure and recognise hedge ineffectiveness. The IASB considered that the actual results of the hedging relationships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during the period of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Therefore, the IASB decided that entities should continue to measure and recognise hedge ineffectiveness as required by IFRS Standards.	BC6.567 IASB는 예외규정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6.568 The IASB also considered whether any exceptions should be made to the measurement of hedged items or hedging instruments because of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However, the IASB noted that such an excep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decision not to change the requirements to	BC6.568 또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예외는 재무제표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과

measure and recognise hedge ineffectivenes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the IASB decided not to provide an exception from the measurement of hedging instruments and hedged items. This means that the fair value of a derivative designated as the hedging instrument should continue to be measured using the assumptions that market participants would use when pricing that derivative as required by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들을 사용하여 계속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C6.569 For a hedged item designated in a fair value hedge, IFRS 9 requires an entity to remeasure the hedged item for changes in fair value attributable to the hedged risk and recognise the gain or loss related to that fair value hedge adjustment in profit or loss. In doing so, the entity uses the assumptions that market participants would use when pricing the hedged item for changes in fair value attributable to the hedged risk. This would include a risk premium for uncertainty inherent in the hedged risk that market participants would consider. For example, to measure changes in fair value attributable to the hedged risk such as the IBOR component of a fixed-rate loan, an entity needs to reflect the uncertainty caused by the reform. When applying a present value technique to calculate the changes in fair value attributable to the designated risk component, such measurement should reflect market participants' assumptions about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BC6.569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IFRS 9에서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파악하고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과 관련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회피대상위험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위험프리미엄이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 대출의 IBOR 요소와 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위험요소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측정에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BC6.570 When an entity designates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as the hedged item in a cash flow hedge, to calculate the change in the value of the hedged item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hedge ineffectiveness, the entity may use a derivative that would have terms that match the critical terms of the designated cash flows and the hedged risk (this is commonly referred to as a 'hypothetical derivative'). As the IASB decided that entities should continue to measure and recognise hedge ineffectiveness as required by IFRS Standards, entities should continue to apply assump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those applied to the hedged risk of the hedged item. For example, if an entity designated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as the hedged item in a cash flow hedge, the entity would not assume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hedge ineffectiveness that the expected replaceme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result in zero cash flows after the replacement. The hedging gain or loss on the hedged item should be measured us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that is, the cash flows on which the hypothetical derivative is based) when applying a present value technique, discounted at a market-based discount rate that reflects market participants' assumptions about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The IASB concluded that reflecting market participants' assumptions when	BC6.570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현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의 중요한 조건이 일치하는 조건을 갖는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가상의 파생상품'이라고 불린다). IASB가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에 적용되는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 후의 현금흐름이 영(0)이 된다고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은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즉, 가상의 파생상품이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 시장기준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실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measuring hedge ineffectiveness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bout the effects of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on an entity's hedging relationships. Therefore, the IASB decided that no exceptions are needed for the measurement of actual ineffectiveness.	
Hedges of risk components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
BC6.571 The IASB noted that in accordance with IFRS 9 an entity may designate an item in its entirety or a component of an item as the hedged item in a hedging relationship. For example, an entity that issues a 5-year floating-rate debt instrument that bears interest at 3-month LIBOR + 1%, could designate as the hedged item either the entire debt instrument (that is, all of the cash flows) or only the 3-month LIBOR risk component of the floating-rate debt instrument. Specifically, paragraph 6.3.7(a) of IFRS 9 allows entities to designate only changes in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of an item attributable to a specific risk or risks (risk component) provided that the risk component is separately identifiable and reliably measurable.	BC6.571 IASB는 IFRS 9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 또는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3개월 LIBOR+1%의 이자를 부담하는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은 전체 채무상품(즉, 모든 현금흐름) 또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3개월 LIBOR 위험요소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FRS 9 문단 6.3.7(1)에서는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특정 위험이나 위험들(위험요소)에 따른 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6.572 The IASB observed that an entity's ability to conclude that an interest rate benchmark is a separately identifiable compon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3.7(a) of IFRS 9 requires a continuous assessment over the dur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and could be affected by the reform. For example, if the outcome of the reform affects the market structure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t	BC6.572 IASB는 이자율지표가 IFRS 9 문단 6.3.7(1)에 따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라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개혁의 결과가 이자율지표의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LIBOR 구성요소가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지, 따라서 위험회피관계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지에 대한 기업의

could affect an entity's assessment of whether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LIBOR component is separately identifiable and, therefore, an eligible hedged item in a hedging relationship. The IASB considered only risk components that are implicit in the fair value or the cash flows of an item of which they are a part (referred to as non-contractually specified) because the same issue does not arise for risk components that are explicitly specified in the contract.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SB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하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요소(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BC6.573 For the reasons outlined in paragraph BC6.550, the IASB noted that discontinuing hedging relationships due to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would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Consequently, the IASB decided to propose amending IFRS 9 so that entities would not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solely because the risk component is no longer separately identifiable as a result of the reform. In the 2019 Exposure Draft, the IASB proposed that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for hedges of the benchmark component of interest rate risk be applied only at the inception of those hedging relationships affected by the reform.	BC6.573 문단 BC6.550에 기술된 이유로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혁의 결과로 위험요소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도록 IFRS 9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BC6.574 The IASB proposed not to extend the relief to allow entities to designate the benchmark component of interest rate risk as the hedged item in a new hedging relationship if the risk component is not separately identifiable at the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In the IASB's view, allowing hedge accounting for risk	BC6.574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본

components that are not separately identifiable at the incep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exception. The IASB noted that such circumstances are different from allowing continued designation as the hedged item for risk components that had met the requirement at the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다. IASB는 그러한 상황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요구사항을 충족한 위험요소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계속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BC6.575 Furthermore, the IASB did not propose any exception from the requirement that changes in the fair value or cash flows of the risk component must be reliably measurable. As noted in paragraph BC6.566, in the IASB's view, an offset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hedge accounting model in IFRS 9 and, therefore, the IASB considered reliable measurement of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to be critical to maintain this principle.	BC6.575 뿐만 아니라, IASB는 위험요소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제안하지 않았다. 문단 BC6.56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BC6.576 Almost all respondents agreed with the exception proposed in the 2019 Exposure Draft to apply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only at the incep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However, some respondents noted that the proposed exception did not provide equivalent relief to hedging relationships that frequently reset (ie discontinue and restart). In those hedging relationships both the hedging instrument and the hedged item frequently change (ie the entity uses a dynamic process in which both the hedged items and the hedging instruments used to manage that exposure do not	BC6.576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한 2019년 공개초안의 예외규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예외규정이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상응하는 완화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모두 자주 변경된다(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한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 기업들은 익스포저를 조정

remain the same for long). As hedging instruments and hedged items are being added or removed from a portfolio, entities are de-designating and redesignating hedging relationships regularly to adjust the exposure. If each redesign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is considered to be the inception of a new hedging relationship (even though it is still the same hedging strategy), then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would need to be assessed for all hedged items at each redesignation even if they have been assessed previously. For the same reasons as those noted in paragraph BC6.572, this could affect an entity's ability to conclude that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remains separately identifiable and, therefore, an eligible hedged item for hedge accounting purposes.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재지정한다. 위험회피관계의 각각의 재지정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면(여전히 동일한 위험회피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재지정의 모든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6.572에 기술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이것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여전히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여전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라고 기업이 결론내릴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C6.577 The IASB noted that the exception proposed in the 2019 Exposure Draft has the effect that if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meets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t the incep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then that requirement would not be reassessed subsequently. Hence, providing a similar exception for hedging relationships that frequently reset (ie discontinue and restart)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exception originally provided in the 2019 Exposure Draft.	BC6.577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예외규정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그 요구사항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외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당초 제공한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다.
BC6.578 Thus, the IASB confirmed the proposal that a risk component is only required to be separately	BC6.578 따라서 IASB는 위험요소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제안을 확정하였

identifiable at the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In addition, to respond to the feedback described in paragraph BC6.576, the IASB added the exception in paragraph 6.8.8 of IFRS 9 for hedging relationships that, consistent with an entity's hedge documentation, frequently reset (ie discontinue and restart) because both the hedging instrument and the hedged item frequently change. Applying that paragraph, an entity shall determine whether the risk component is separately identifiable only when it initially designates an item as a hedged item in the hedging relationship. The hedged item is not reassessed at any subsequent redesignation in the same hedging relationship.	다. 또 IASB는 문단 BC6.576에 기술된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모두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회피 문서화와 일관되게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하는 위험회피관계를 위해 IFRS 9의 문단 6.8.8에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을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하는 때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BC6.579 In reaching its decision for the exception in paragraph 6.8.8 of IFRS 9 the IASB considered an example where an entity uses a dynamic process to manage interest rate risk as discussed in paragraph B6.5.24(b) of IFRS 9 and designates the LIBOR risk component of floating-rate loans as the hedged risk. At the inception of the relationship, the entity assesses whether LIBOR is a separately identifiable risk component for all loans designated within the hedging relationship. As the entity updates the risk position with the origination of new loans and the maturity or repayment of existing loans, the hedging relationship is adjusted by de-designating the 'old' hedging relationship and redesignating a 'new' hedging relationship for the updated amount	BC6.579 IFRS 9의 문단 6.8.8의 예외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IASB는 IFRS 9의 문단 B6.5.24⑵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동적인 절차를 사용하고 변동금리대출금의 LIBOR 위험요소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는 예를 고려하였다.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기업은 LIBOR가 위험회피관계 내에 지정된 모든 대여금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를 평가한다. 새로운 대여금의 발생과 기존 대여금의 만기도래 또는 상환에 따라 위험포지션을 갱신할 때 위험회피관계는 '구'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업데이트된 금액에 대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재지정함으로써 조정한다. IFRS 9의 문단 6.8.8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관계에 추가된 새로운 대여금에 대해서만 LIBOR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재지정된 대여금에 대해서는

of the hedged items. Applying the exception in paragraph 6.8.8 of IFRS 9 requires the entity to assess whether LIBOR is a separately identifiable risk component only for the new loans added to the hedging relationship. The entity would not reassess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for the loans that have been redesignated.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재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Mandatory application	**의무적용**
BC6.580 The IASB decided to require entities to apply the exceptions in Section 6.8 of IFRS 9 to all hedging relationships to which the exceptions are applicable. In other words, the IASB decided that an entity is required to apply the exceptions to all hedging relationships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and continue to apply the exceptions until required to cease their application as specified in paragraphs 6.8.9 – 6.8.12 of IFRS 9.	BC6.580 IASB는 IFRS 9의 제6.8절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해당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 적용해야 하며 IFRS 9 문단 6.8.9~6.8.1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을 중단해야 할 때까지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6.581 The IASB considered but rejected alternatives that would have allowed entities to apply the exceptions voluntarily. In the IASB's view, voluntary application of these exceptions could give rise to selectiv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and selective reclassification of the amounts record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related to previously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The IASB does not expect that requiring entities to apply the exceptions would entail significant cost for preparers and other affected parties because the exceptions require entities to	BC6.581 IASB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선별적으로 중단하거나 종전에 중단되었던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재분류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예외규정에서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및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므로 예외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작성자와 그 밖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원가를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risk and the hedged cash flows, and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BC6.582 In addition, the IASB observed that in some circumstances, the exceptions in Section 6.8 of IFRS 9 may not be applicable. For example, for a particular interest rate benchmark not subject to the reform or replacement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re is no uncertainty affecting the timing or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arising from a hedged item or a hedging instrument. The exceptions set out in Section 6.8 of IFRS 9 would not be applicable to such a hedging relationship.	BC6.582 또 IASB는 일부 상황에서 IFRS 9의 제6.8절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개혁이나 대체 대상이 아닌 특정 이자율지표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은 없다. IFRS 9의 제6.8절에 명시된 예외규정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BC6.583 Furthermore, for a particular hedging relationship the exceptions may be applicable to some but not all aspects of the hedging relationship. For example, if an entity designates a hedged item that is based on LIBOR against a hedging instrument that is already referenced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suming the entity can demonstrate that hedging relationship meets the qualifying criteria for hedge accounting in IFRS 9), the exceptions in paragraphs 6.8.4 and 6.8.6 of IFRS 9 would apply for the hedged item because there is uncertainty related to its future cash flows. However, there is no uncertainty regarding how the reform would impact the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and, therefore, the	BC6.583 또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예외규정은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모든 면이 아닌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LIBOR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위험회피관계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IFRS 9의 문단 6.8.4와 6.8.6의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IFRS 9의 문단 6.8.6의 예외규정은 위험회피수단에 적용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의 지정을 수

exception in paragraph 6.8.6 of IFRS 9 is not applicable for the hedging instrument. Similarly, the exception applicable to non-contractually specified components would not be relevant for hedging relationships that do not involve the designation of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s.	반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End of application	**적용 종료**
BC6.584 As described in paragraph BC6.550, the IASB decided to amend IFRS 9 to address specific aspects of hedge accounting affected by uncertainties in relation to the hedged items and hedging instruments about wh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s will change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when any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be determined (collectively, timing) and what the cash flows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be, including their frequency of reset, and any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collectively, amount). Therefore, the IASB intended the exceptions set out in Section 6.8 of IFRS 9 to be available only while these uncertainties are present.	BC6.584 문단 BC6.550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는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변경되는 시기,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되는 시기(이하 '시기'로 통칭함),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이 재설정 빈도를 포함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간 스프레드 조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이하 '금액'으로 통칭함)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관련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회계의 특정 부분을 다루기 위해 IFRS 9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IFRS 9의 제6.8절에 제시된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C6.585 The IASB considered whether to provide an explicit end date for the exceptions but decided not to do so. The reform is following different timelines in different markets and jurisdictions and contracts are being modified at different times and, therefore, at this stage, it is not possible to	BC6.585 IASB는 예외규정에 대해 명시적인 종료일을 제공할지를 고려하였으나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시장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일정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계약은 서로 다른 시기에 수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define a period of applicability for the exceptions.	
BC6.586 The IASB decided that an entity ceases applying the exceptions at the earlier of (a) when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is no longer present as it relates to a hedged item and/or hedging instrument (depending on the particular exception) and (b) the discontinu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4] The exceptions require entities to apply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assum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risk, hedged cash flows or the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The end of applicability of the exceptions means that entities would from that date apply all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without applying these exceptions.	BC6.586 IASB는 (1) (특정 예외규정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와 (2) 위험회피관계의 중단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4] 예외규정에서는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특정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예외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시점부터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IFRS 9의 모든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exception in paragraph 6.8.5 of IFRS 9 to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the amendments require an entity to cease applying the exception at the earlier of (a) as described above and (b) when the entir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with respect to the hedging relationship has been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See paragraph 6.8.10 of IFRS 9.	4.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IFRS 9 문단 6.8.5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서는 (1) 위에서 기술된 때와 (2)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전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IFRS 9 문단 6.8.10 참조).
BC6.587 In the IASB's view, for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ash flows arising from a change in an interest rate benchmark to be eliminated, the	BC6.587 IASB는 이자율지표의 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려면 일반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또한 이자율지표 및

underlying contracts are generally required to be amended to specify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ash flows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nd any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IASB noted that, in some cases, a contract may be amended to include reference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thout actually alter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in the contract. Such an amendment may not eliminate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in the contract. The IASB considered the following scenarios to assess the robustness of the end of application requirements. However, these scenarios are not exhaustive and other scenarios may exist in which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ash flows would no longer be present.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을 특정하기 위해 당초 계약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일부의 경우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실제로 변경하지 않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도록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을 없애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요구사항의 적용이 적절히 종료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시나리오들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모든 상황을 망라하지는 못하며 개혁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BC6.588 Scenario A—a contract is amended to include a clause that specifies (a) the date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ll be replaced by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nd (b)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cash flows will be based and the relevant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n this case,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ash flows for this contract is eliminated when the contract is amended to include this clause.	BC6.588 시나리오 A: (1)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되는 날짜와 (2)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할 때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다.

BC6.589 Scenario B—a contract is amended to include a clause that states modifications of contractual cash flows will occur due to the reform but that specifies neither the dat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ll be replaced no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amended cash flows will be based. In this case,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ash flows for this contract has not been eliminated by amending the contract to include this clause.	BC6.589 시나리오 B: 개정된 계약의 관련 조항에서 개혁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은 발생할 것이라고 명시하지만 이자율지표가 대체되는 날짜나 수정된 현금흐름이 기초할 대체 지표 이자율을 특정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하더라도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BC6.590 Scenario C—a contract is amended to include a clause which states that conditions specifying the amount and timing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will be determined by a central authority at some point in the future. But the clause does not specify those conditions. In this case,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for this contract has not been eliminated by including this clause in the contract. Uncertainty regarding both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ash flows for this contract will be present until the central authority specifies when the replacement of the benchmark will become effective, and w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nd any related spread adjustment will be.	BC6.590 시나리오 C: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특정하는 조건이 미래 어느 시점에 중앙 기관(central authority)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러한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이 계약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은 이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 모두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앙 기관이 지표 이자율의 대체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와 대체 지표 이자율 및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할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BC6.591 Scenario D—a contract is amended to include a clause in anticipation of the reform that specifies the date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ll be replaced and any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BC6.591 시나리오 D: 개혁을 예측하여 지표 이자율이 대체될 날짜와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될 날짜를 특정하는 조항이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개정으로 현금흐름의 기초가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be determined. However, the amendment does not specify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r the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cash flows will be based. In this scenario, by amending the contract to include this claus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has been eliminated but uncertainty about the amount remains.	될 대체 지표 이자율이나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명시되지는 않는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BC6.592 Scenario E—a contract is amended to include a clause in anticipation of the reform that specifies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cash flows will be based and the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but does not specify the date from which the amendment to the contract will become effective. In this scenario, by amending the contract to include this clause, uncertainty about the amount has been eliminated but uncertainty with respect to timing remains.	BC6.592 시나리오 E: 개혁을 예측하여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되 계약의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BC6.593 Scenario F—in preparation for the reform, a central authority in its capacity as the administrator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undertakes a multi-step process to replace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objective of the reform is to cease the publication of the current interest rate benchmark and replace it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part of the reform, the administrator introduces an interim benchmark rate and determines a fixed spread adjustment based on	BC6.593 시나리오 F: 개혁에 대비하여, 이자율지표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기관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를 수행한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현행 이자율지표의 발표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다. 중앙 기관은 개혁의 일환으로 예비 지표 이자율을 도입하고, 예비 지표 이자율과 현행 이자율지표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고정된 스프레드 조정을 결정한다. 예비 지표 이자율(중앙 기관이 결정한 고정 스프레드 조정을 포함함)은 개혁을 진행해 가는 과정의 중간조치에 해당하지만 대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im benchmark rate and the current interest rate benchmark. Uncertainty about the timing or the amount of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based cash flows will not be eliminated during the interim period because the interim benchmark rate (including the fixed spread adjustment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or) represent an interim measure in progressing towards the reform but it does not represen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r any related spread adjustment agreed between parties to the contract).	체 지표 이자율(또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기간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BC6.594 For reasons similar to those described in paragraph BC6.583, the IASB noted that there could be situations in which the uncertainty for particular elements of a single hedging relationship could end at different times. For example, assume an entity is required to apply the relevant exceptions to both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If the hedging instrument in that hedging relationship is subsequently amended through market protocols covering all derivatives in that market, and will be based on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such that the uncertainty about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is eliminated, the relevant exceptions would continue to apply to the hedged item but would no longer apply to the hedging instrument.* * In this scenario, the entity would first	BC6.594 문단 BC6.583에서 기술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IASB는 단일 위험회피관계에서 특정 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은 서로 다른 시점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이 그 시장의 모든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시장 협약을 통해 후속적으로 변경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게 됨으로써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근거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관련 예외규정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계속 적용되지만 위험회피수단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 이 시나리오에서는 먼저 위험회피수단의

consider the accounting consequences of amending the contractual terms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 IASB will consider the accounting consequences of the actual amend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n the next phase of this project (ie the replacement phase).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의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IASB는 이 과제의 다음 단계(대체 단계)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금융상품의 실제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BC6.595 The IASB observed that continuing to apply the exception after the uncertainty was resolved would not faithfully represent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s of the hedging relationship in which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is eliminated. The IASB considered whether it should extend the relief provided such that the exceptions would apply at the hedging relationship level for as long as any element of that hedging relationship was affected by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The IASB agreed that doing so would be beyond the objective of addressing only those issues directly affected by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This is also because the exceptions in paragraphs 6.8.4 – 6.8.12 of IFRS 9 and the respective requirements in IFRS 9 apply to the same elements of the hedging relationship. Therefore, applying each exception at the hedging relationship level would be inconsistent with how the underlying requirements are applied.	BC6.595 IASB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도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없어진 위험회피관계의 요소들에 대한 실제 특성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IASB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일부 요소라도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한 예외규정이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려하였다. IASB는 그렇게 하는 것은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것은 IFRS 9의 문단 6.8.4~6.8.12의 예외규정과 IFRS 9의 각각의 요구사항이 위험회피관계의 동일한 요소에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각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C6.596 The IASB decided that the end of application requirement would also apply to hedges of a forecast	BC6.596 IASB는 요구사항 적용의 종료가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9에서

transaction. The IASB noted that IFRS 9 requires an entity to identify and document a forecast transaction with sufficient specificity so that, when the transaction occurs, the entity is able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action is the hedged transaction. For example, if an entity designates a future issuance of a LIBOR-based debt instrument as the hedged item, although there may be no contract at the time of designation, the hedge documentation would refer specifically to LIBOR. Consequently, the IASB concluded that entities should be able to identify when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resulting cash flows of a forecast transaction is no longer present.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거래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예상거래를 식별하여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기업이 미래에 발행할 LIBOR에 기초한 채무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지정 시점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위험회피 문서화는 LIBOR를 분명하게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6.597 In addition, the IASB decided not to require end of application with respect to the exception for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s set out in paragraphs 6.8.7 and 6.8.8 of IFRS 9. Applying these exceptions, entities would continue applying hedge accounting when an interest rate benchmark meets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t the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assuming all other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continue to be met). If the IASB included an end date for these exceptions, an entity may be required to immediately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because, at some point, as the reform progresses, the component based o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may no longer be separately identifiable (for example,	BC6.597또한 IASB는 IFRS 9 문단 6.8.7과 6.8.8에서 제시된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는 적용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이자율지표가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모든 다른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 계속 충족된다고 가정). 만약 IASB가 예외규정의 종료일을 포함하였다면, 어느 시점(예: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형성)에는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이자율지표에 근거한 요소가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에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 종

as the market fo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established). Such immediat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exception. The IASB noted that linking the end of application for these exceptions to contract amendments would not achieve the IASB's intention either because, by definition,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s are not explicitly stated in a contract and, therefore, these contracts may not be amended for the reform.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for fair value hedges of a fixed-rate debt instrument. Therefore, the IASB decided that an entity should cease applying the exceptions to a hedging relationship only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is discontinued applying IFRS 9.	료를 계약 변경에 연결 지을 경우 IASB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의에 따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는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그 결과 이러한 계약은 개혁 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가 IFRS 9를 적용할 경우 중단될 때에만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6.598 Some respondents to the 2019 Exposure Draft noted that the IASB had not addressed when an entity ceases applying the proposed exceptions to a group of items designated as the hedged item or a combin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designated as the hedging instrument. Specifically, when assessing whether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is no longer present, these respondents asked whether that assessment should be performed on an individual basis (that is, for each individual item within the group or financial instrument within the combination) or on a group basis (that is, for all items in the group or all financial instruments in the combination until there is no	BC6.598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 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결합에 대하여 제안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지를 평가할 때, 이 의견제출자들은 그 평가가 개별기준으로(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집합 기준으로(즉,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모두 또는 결합에 포함된 금융상품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집합 내의 모든 항목 또는 결합 내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uncertainty surrounding any of the items or financial instruments).	
BC6.599 Consequently, the IASB decided to add paragraph 6.8.12 of IFRS 9 to clarify that, when designating a group of items as the hedged item or a combin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s the hedging instrument, entities assess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with respect to the hedged risk and/or the timing and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at item or financial instrument is no longer present on an individual basis—that is, for each individual item in the group or financial instrument in the combination.	BC6.599 결과적으로, IASB는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회피대상위험과(또는) 그 항목 또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개별 기준으로 (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 시점을 평가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IFRS 9 문단 6.8.12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시행일과 경과규정**
BC6.600 The IASB decided that entities shall apply the amendments for annual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0, with earlier application permitted.	BC6.600 IASB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BC6.601 The IASB decided that the amendments apply retrospectively. The IASB highlighted that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amendments would not allow reinstating hedge accounting that has already been discontinued. Nor would it allow designation in hindsight. If an entity had not designated a hedging relationship, the exceptions, even though applied retrospectively, would not allow the entity to apply hedge accounting in prior periods to items that were not designated for hedge accounting. Doing so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 that hedge accounting applies prospectively. Retrospective	BC6.601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예외규정이 소급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지정되지 않았던 과거기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허용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예외규정의 소급적용으로 기업이 이전에 지정했고 IFRS 9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는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application of the exceptions would enable entities to continue hedge accounting for a hedging relationship that the entity had previously designated and that qualifies for hedge accounting applying IFRS 9.	
BC6.602 Many respondents to the 2019 Exposure Draft commented on the clarity of the proposed retrospective application and suggested that further explanation be provided in the Standard. Consequently, the IASB amended the transition paragraph to specify that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lies only to those hedging relationships that existed at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ose requirements or were designated thereafter, and to the amount accumulated in the cash flow hedge reserve that existed at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ose requirements. The IASB used this wording to permit an entity to apply the amendments from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ese amendments even if the reporting period is not an annual period.	BC6.602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 제출자들은 제안된 소급적용의 명확성에 대해 언급하고 기준서에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그 요구사항들을 처음으로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위험회피관계나 그 후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그 요구사항들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에만 소급적용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의 문단을 개정하였다. IASB는 보고기간이 연차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BC6.603 The IASB noted that these amendments would also apply to entities adopting IFRS Standards for the first time as required by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ccordingly, the IASB did not provide specific transition provisions for those entities.	BC6.603 IASB는 이 개정사항들이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IFRS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특정한 경과규정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결론도출근거 개정**

Recognition and Measurement	
This Basis for Conclusions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AS 39.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After paragraph BC222, new headings and paragraphs BC223 – BC288 are added.	문단 BC222 다음에, 새로운 제목 및 문단 BC223~BC288이 추가되었다.
Hedging	**위험회피**
Amendments for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September 2019)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개정(2019년 9월)**
BC223 Interest rate benchmarks such as interbank offered rates (IB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global financial markets. These interest rate benchmarks index trillions of dollars and other currencies in a wide variety of financial products, from derivatives to residential mortgages. However, cases of attempted market manipulation of some interest rate benchmarks, together with the post-crisis decline in liquidity in interbank unsecured funding markets, have undermined confidence in the reliability and robustness of some interest rate benchmark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G20 aske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to undertake a fundamental review of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Following the review, the FSB published a report setting out its recommended reforms of some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such as IBORs. Public authorities in many jurisdictions have since taken steps to implement those recommendations. In some jurisdictions, there is already clear progress towards the reform of interest rate benchmarks, or the replacement of interest rate	BC223 은행간 대출금리(IBORs: Interbank offered rates)와 같은 이자율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생상품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이자율지표는 수조 달러와 그 밖의 통화들을 지수화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은행간 무담보 자금조달 시장의 유동성 감소와 일부 이자율지표의 시장 조작 시도 사례는 일부 이자율지표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대한 확신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주요 이자율지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검토 후, 은행간 대출금리와 같은 일부 주요 이자율지표의 개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많은 국가의 공적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거래 데이터에 이자율지표를 대신하여 위험이 거의 없는 대체 이자율(대체 기준금리)로 상당부분 대체하는 등 이자율지표 개혁에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 이는 결국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체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개혁)*

	benchmarks with alternative, nearly risk-free interest rates that are based, to a greater extent, on transaction data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his has in turn led to uncertainty about the long-term viability of some interest rate benchmarks. In these amendments, the ter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refers to the market-wide reform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ncluding its replacement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such as that resulting from the FSB's recommendations set out in its July 2014 report 'Reforming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the reform).*		에 제시된 권고에 따른 결과로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 The report, 'Reforming Major Interest Rate Benchmarks', is available at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		* 보고서 '주요 이자율지표 개혁'은 'http://www.fsb.org/wp-content/uploads/r_140722.pdf'에서 이용할 수 있음
BC224	In 2018 the Board noted the increasing levels of uncertainty about the long-term viability of some interest rate benchmarks and decided to address as a priority the issues affecting financial reporting in the period before the reform (referred to as pre-replacement issues).	BC224	2018년에 IASB는 일부 이자율지표가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였고, 개혁 이전 기간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대체 전 이슈'라고 함)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BC225	As part of the pre-replacement issues, the Board considered the implications for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and IAS 39, which require forward-looking analysis. As a result of the reform, contractual cash flows of hedged items and hedging instruments based on an existing interest rate benchmark will likely change when that interest	BC225	대체 전 이슈의 일부로서, IASB는 미래전망 분석을 요구하는 IFRS 9와 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개혁에 따라, 현재의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그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때 변경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은 계약상 특정된 현금흐름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현금

	rate benchmark is subject to the reform—in these amendments, contractual cash flows encompass both contractually specified and non-contractually specified cash flows. The sam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future cash flows will likely affect the changes in fair value of hedged items and hedging instruments in a fair value hedge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 exposure. Until decisions are made about w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and when and how the reform will occur, including specifying its effects on particular contracts, uncertainties will exist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future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흐름 모두를 포함한다. 개혁으로 인하여 생기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동일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 익스포저(exposure)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체 지표 이자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혁이 특정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BC226	The Board noted that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and IAS 39 provide a clear basis for accounting for such uncertainties. In applying these requirements, the uncertainties about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future cash flows could affect an entity's ability to meet those specific forward-looking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the period when uncertainty is created by the reform. In some cases, solely due to such uncertainties, entities could be required to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for hedging relationships that would otherwise qualify for hedge accounting. Also, because of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entities may not be able to designate new hedging relationships that would otherwise	BC226	IASB는 IFRS 9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회계처리의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생긴 기간에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특정 미래전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위험회피관계를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중단하게 될 수 있다. 또한 IFRS 9와 IAS 39를 적용할 때 그러한 불확실성이 없었더라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했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qualify for hedge accounting applying IFRS 9 and IAS 39. In some cases,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would require an entity to recognise gains or losses in profit or loss.		
BC227	In the Board's view,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solely due to such uncertainties before the reform's economic effects on hedged items and hedging instruments are known would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the Board decided to publish in May 2019 the Exposure Draf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2019 Exposure Draft), which proposed exceptions to IFRS 9 and IAS 39 to provide relief during this period of uncertainty.	BC227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알기 전에, 그러한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IFRS 9와 IAS 39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2019년 공개초안)을 2019년 5월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BC228	The 2019 Exposure Draft proposed exceptions to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such that entities would apply those requirements assum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risk and/or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or of the hedging instrument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The proposed exceptions applied only to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specified in that Exposure Draft and were not intended to provide relief from all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reform.	BC228	2019년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회피대상위험과(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 개혁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제안된 예외규정은 공개초안에서 특정하는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만 적용되며, 개혁으로 인하여 모든 결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BC229	Almost all respondents to the 2019 Exposure Draft agreed with the Board's decision to address pre-replacement issues. Many highlighted the urgency of these issues, especially in some jurisdictions where there is already	BC229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대체 전 이슈를 다루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문제가 긴급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자율지표를 개혁하거나 대체 지표 이자율로 이자율지표를 대체하는 데 이

	clear progress towards the reform or replacement of interest rate benchmarks with alternative benchmark rates.		미 분명한 진전이 있는 국가의 의견 제출자들이 그러하였다.
BC230	In September 2019 the Board amended IFRS 9, IAS 39 and IFRS 7 by issuing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which confirmed with modifications the proposals in the 2019 Exposure Draft. In the amendments issued in September 2019, the Board added paragraphs 102A-102N and 108G to IAS 39.	BC230	2019년 9월,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확정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을 발표하여 IFRS 9, IAS 39, IFRS 7을 개정하였다. 2019년 9월에 발표한 개정에서 IASB는 IAS 39에 문단 102A~102N과 108G를 추가하였다.
BC231	The Board decided to propose amendments to IAS 39 as well as IFRS 9 because when entities first apply IFRS 9, they are permitted to choose as an accounting policy to continue to apply the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of IAS 39. The Board understands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IFRS preparers—financial institutions in particular—have made such an accounting policy choice.	BC231	IASB는 IFRS 9를 최초 적용할 때, 기업이 회계정책으로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IFRS 9뿐만 아니라 IAS 39의 개정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상당수의 IFRS 재무제표작성자(특히 금융기관)가 그러한 회계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Scope of the exceptions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BC232	In the 2019 Exposure Draft, the Board noted that the hedge accounting issues being addressed arise in the contex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and, therefore, the proposed exceptions would apply only to hedging relationships of interest rate risk that are affected by the reform. However, some respondents expressed the view that the scope of the exceptions, as set out in the 2019 Exposure Draft, would not include other types of hedging relationships that may be affected by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such as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an entity	BC232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이슈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제안된 예외규정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자율 위험의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 외화위험과 이자율위험 모두의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 이종통화 이자율스왑을 지정하는 위험회피관계처럼,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 밖의 다른 위험회피관계 유형은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예외규정의 적용범위가 그러한 위험

	designates cross-currency interest rate swaps to hedge its exposure to both foreign currency and interest rate risk. These respondents asked the Board to clarify whether the scope of the exceptions was meant to include such hedging relationships.		회피관계를 포함하려고 했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C233	In its redeliberations on the 2019 Exposure Draft, the Board clarified that it did not intend to exclude from the scope of the amendments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interest rate risk is not the only designated hedged risk. The Board agreed with respondents that other hedging relationships could be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when the reform gives rise to uncertainties about the timing or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or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refore, the Board confirmed that the exceptions would apply to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in these situations. The Board noted that many derivatives, designated in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there is no uncertainty about the timing or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could be in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For example, this would be the case when the valuation of the derivatives is affected by general uncertainty in the market caused by the reform. The Board confirmed that the exceptions do not apply to these hedging relationships, despite the indirect effect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could have on the valuation of derivatives.	BC233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재심의 과정에서 이자율 위험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로 개정의 적용범위를 국한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IASB는 개혁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회피관계가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IASB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지정된 많은 파생상품이 개혁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가 개혁에 의해 야기된 시장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은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BC234	Consequently, the Board clarified the wording in paragraph 102A of IAS 39 to refer to all hedging relationships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Paragraph 102A of IAS 39 explains that a hedging relationship is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only if the reform gives rise to uncertainties abou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contractually or non-contractually specified) designated as a hedged risk and/or the timing or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or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 scope of the exceptions does not exclude hedging relationships in which interest rate risk is not the only hedged risk.	BC234	결과적으로,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언급하기 위해 IAS 39의 문단 102A의 문구를 명확히 하였다. IAS 39의 문단 102A에 따르면, 개혁으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이자율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와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 또는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자율 위험이 유일한 회피대상위험이 아닌 위험회피관계를 예외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Highly probable requirement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	
BC235	The Board noted that if an entity designates a forecast transaction as the hedged item in a cash flow hedge, applying paragraph 88(c) of IAS 39, that transaction must be highly probable (highly probable requirement). This requirement is intended to ensure that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designated hedging instruments are recognis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only for those hedged forecast transactions that are highly probable to occur. This requirement is an important discipline in applying hedge accounting to forecast transactions. The Board noted that the requirements in IAS 39 provide a clear basis to account for the effects of the reform—that is, if the effects of the reform are	BC235	IASB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 IAS 39의 문단 88(3)을 적용하려면 그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것(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지정된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요구사항은 예상거래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다. IASB는 IAS 39의 해당 요구사항이 개혁의 영향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개혁의 영향으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 가능성이 더 이상 매우 크지 않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단 BC227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단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

	such that the hedged cash flows are no longer highly probable, hedge accounting should be discontinued. As set out in paragraph BC227, in the Board's view, discontinuing all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s solely due to such uncertainty would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BC236	Therefore, the Board amended IAS 39 to provide an exception to the highly probable requirement that would provide targeted relief during this period of uncertainty. More specifically, applying the exception, if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based on an interest rate benchmark that is subject to the reform, an entity assumes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re based is not altered when assessing whether the future cash flows are highly probable. If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based on a highly probable forecast transaction, by applying the exception in paragraph 102D of IAS 39 when performing the assessment of the highly probable requirement for that forecast transaction, the entity would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re based will not be altered in the future contract as a result of the reform. For example, for a future issuance of a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referenced debt instrument, the entity would assume that the LIBOR benchmark rate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re based	BC236	따라서 IASB는 불확실성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면제를 주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자 IAS 39를 개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개혁으로 영향을 받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한다면, 미래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에 기초한다면, 그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때, IAS 39의 문단 102D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미래의 계약에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를 참조하는 채무상품의 향후 발행에 대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LIBOR 기준금리는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will not be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BC237	The Board noted that this exception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an entity determining that the hedged cash flows are highly probable. In the example described in paragraph BC236, the entity assumed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in the future contract would not be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when determining whether that forecast transaction is highly probable. However, if the entity decides not to issue the debt instrument because of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or for any other reason,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no longer highly probable (and are no longer expected to occur). The exception would not permit or require the entity to assume otherwise. In this case, the entity would conclude that the LIBOR-based cash flows are no longer highly probable (and are no longer expected to occur).	BC237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반드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36에서 기술한 예에서,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판단할 때, 개혁의 결과로 미래 계약의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 밖의 이유로 채무상품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은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예외규정이 다르게 가정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기업은 LIBOR에 기초한 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다(더 이상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BC238	The Board also included an exception for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Applying this exception, any amount remaining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when a hedging relationship is discontinued would be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in the same period(s) during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ffect profit or los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If, however, the hedged future cash flows are no longer expected to occur for other reasons,	BC238	IASB는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예외규정도 포함하였다.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기타포괄손익에 남아 있는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같은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것이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미래 현금흐름이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타포괄손익에 남아 있는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IAS 39의 문단 97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the entity is required to immediately reclassify to profit or loss any amount remaining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In addition, the exception would not exempt entities from reclassifying the amount that is not expected to be recovered into profit or loss as required by paragraph 97 of IAS 3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Effectiveness assessment		**효과성 평가**	
BC239	Applying IAS 39, a hedging relationship qualifies for hedge accounting only if the conditions in paragraph 88 are met. Two of the conditions in that paragraph—the prospective assessment and the retrospective assessment—require that the hedging relationship is highly effective in achieving offsetting changes in fair value or cash flows attributable to the hedged risk. If either of these conditions is not met, paragraphs 91(b) and 101(b) require the entity to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prospectively.	BC239	IAS 39를 적용하는 경우, 문단 88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문단의 조건 중 두 가지, 전진적 평가와 소급적 평가에서는 위험회피관계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문단 91(2)와 101(2)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Prospective assessment		**전진적 평가**	
BC240	When applying paragraph 88(b) of IAS 39, demonstrating that a hedging relationship is 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 requires the estimation of future cash flows because the assessment is prospective in nature.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could affect this assessment for hedging relationships that may extend beyond the timing of the reform. That is because entities would have to consider possible changes to the fair value or future cash flows of hedged items and hedging instruments in determining whether a hedging	BC240	IAS 39 문단 88(2)를 적용할 때, 평가는 기본적으로 전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이 필요하다. 개혁의 시점 이후에도 존재할 수도 있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이자율지표 개혁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가능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단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relationship is 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 Consequently, at some point in time, it is possible that entities would not be able to meet the condition in paragraph 88(b) of IAS 39 solely because of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IAS 39 문단 88(2)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BC241	The Board considered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that would result from the potential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for affected hedging relationships and decided to amend the requirement in IAS 39 to provide an exception for the prospective assessment for the same reasons as discussed in paragraph BC227.	BC241	IASB는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잠재적으로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고 문단 BC227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이유로 전진적인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AS 39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242	Applying this exception, an entity shall assess whether the hedge is 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 in achieving offsetting as required by IAS 39,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hedged risk or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item or the hedging instrument is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Similarly, if an entity designates a highly probable forecast transaction as the hedged item, the entity shall perform the prospective assessment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cash flows are based will not change as a result of the reform.	BC242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IAS 39에서 요구하는 위험회피가 상쇄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전진적 평가를 수행한다.
BC 243	The Board noted that an offset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hedge accounting model in IAS 39 and, therefore, the Board considered it critical to maintain this principle.	BC243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외규정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만을 다룬다. 따라서 그 밖의 다른 이유로

The exception addresses only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Therefore, if an entity is unable to demonstrate that a hedging relationship is 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 for other reasons, the entity shall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as required by IAS 39.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IAS 39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BC244 When developing the 2019 Exposure Draft, the Board decided not to propose an exception to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required by paragraph 88(e) and AG105(b) of IAS 39 for the effects of the reform. As described in the 2019 Exposure Draft, that assessment is based on the actual results of the hedging relationship based on the extent to which hedging gains or losses on the hedged item attributable to the hedged risk offset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 Board noted that existing IFRS Standards already provide an adequate basis for measuring ineffectiveness.	BC244 2019년 공개초안을 개발할 때, IASB는 개혁의 영향을 고려하여 문단 88(5)와 AG105(2)에서 요구하는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제안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공개초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평가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 손익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상쇄하는 정도에 기초하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에 근거한다. IASB는 현행 IFRS 기준서가 이미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45 Most respondents disagreed with the Board's decision not to propose an exception to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Respondents noted that due to the inherent interaction between the assessment of the forward-looking cash flows of the hedged item and its effect on both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assessments, the proposed amendments would not achieve their intended effect unless an exception is also provided for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BC245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제안하지 않기로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평가와 이것이 전진적 평가와 소급적 평가 모두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내재적 상호작용 때문에,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이 제공되지 않는 한 제안된 개정안은 의도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BC246 Furthermore, these respondents expressed the view that th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BC246 뿐만 아니라, 이 의견제출자들은 개혁으로 인한 일시적인 비효과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가 IAS 39 문단 AG105

	because hedging relationship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AG105(b) of IAS 39, as a result of the temporary ineffectiveness caused by the reform, would not reflect an entity's risk management strategy and, therefore, would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⑵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기업의 위험관리 전략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BC247	In its redeliberations on the amendments to IAS 39, the Board considered the feedback received. The Board discussed three approaches that it could apply for providing an exception to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for the impact of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BC247	IAS 39의 개정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IASB는 수렴한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위해 소급적 평가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BC248	The Board observed that one possible approach would be to require entities to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is not altered similar to the prospective assessment. Applying this approach would require entities to separate the assessment of retrospective effectiveness from the measurement of hedge ineffectiveness. More specifically, the Board considered that the objective of this approach would be to exclude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from the assessment of whether a hedge is considered to be highly effective and that hedge accounting is continued when the results of this assessment are within the range of 80‑125 per cent as required in paragraph AG105(b) of IAS 39, even if the measurement of actual ineffectiveness is outside that range. The Board was of the view that even though this approach is	BC248	IASB는 한 가지 가능한 접근법이 전진적 평가와 비슷하게 이자율지표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적 효과성 평가를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과 분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IASB는 이 접근법의 목적은 위험회피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배제하는 것이며, 실제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치가 80~125%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 평가 결과가 기업회계기준서 IAS 39 문단 AG105⑵에서 요구하는 같이 80~125% 범위 내에 있을 때 위험회피회계는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IASB는 이 접근법이 IAS 39의 개정에서 제시하는 다른 예외규정과 일관되더라도 서로 다른 가정에 기초하여 두 가지의 효과성 계산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작성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consistent with the other exceptions provided in the amendments to IAS 39, the requirement to perform two effectiveness calculations based on different assumptions could be burdensome on preparers. The Board therefore rejected this approach.	
BC249	The Board also considered an approach that was recommended by respondents to the 2019 Exposure Draft, in which entities would be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to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an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dged item and hedging instrument similar to the requirements in IFRS 9. However, the Board noted that the existence of an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is only one of the requirements in IFRS 9 for a hedging relationship to be highly effective. The Board considered that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6.4.1(c) of IFRS 9 are inherently linked and the application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in isolation might not achieve the intended objective and could result in unintended consequences. The Board therefore rejected this approach.	BC249 또한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의견제출자들이 권고한 접근법을 고려하였는데, 이 접근법에 따르면 기업은 소급적 평가를 위하여 IFRS 9의 요구사항과 유사하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회피관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과 관련된 IFRS 9의 요구사항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IFRS 9의 문단 6.4.1⑶의 요구사항들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관계를 단독으로 적용할 경우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을 기각하였다.
BC250	The Board decided on an approach whereby an entity could continue to apply hedge accounting for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the reform, even if the actual results of the hedging relationship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AG105(b)	BC250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IAS 39 문단 AG105⑵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효과적인 부분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나 그 밖의 원인에서 발생하고 전진적 평가(IAS 39 문단 102F에서 개정)를 포함하여 IAS 39 문단 88의 다른 조건들은 충족된다면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of IAS 39, if the ineffectiveness arose from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or other sources, subject to satisfying the other conditions in paragraph 88 of IAS 39, including the prospective assessment (as amended by paragraph 102F of IAS 39).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을 결정하였다.
BC251	The Board acknowledged that such an approach might provide less discipline compared to the approach described in paragraph BC248, which would introduce additional requirements to mitigate the risk of continuing hedge accounting for hedging relationships that failed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for reasons other than the reform. However, the Board noted that its approach still maintains a level of discipline around the application of the IAS 39 hedge accounting model through the prospective assessment and neither imposes additional costs or burden for preparers nor introduces new requirements in IAS 39.	BC251	IASB는 개혁 이외의 이유로 소급적 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게 되는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가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그러한 접근법이 문단 BC248에 기술한 접근법에 비해 덜 원칙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이 전진적 평가를 통하여 IAS 39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적용과 관련한 원칙의 일정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작성자에게 추가적인 원가나 부담을 부여하지도 않고 IAS 39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52	The Board noted that any exception to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will apply only to a well-defined population of hedging relationships during the period of uncertainty on the hedged items and hedging instruments arising from the reform. Furthermore, the Board noted that the risk of allowing hedge accounting to be applied for hedging relationships that would not otherwise qualify for hedge accounting is mitigated by the required prospective assessment as only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is excluded from that assessment. Any other sources of	BC252	IASB는 소급적 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은 개혁으로 인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 잘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의 집합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위험회피관계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게 되는 위험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만 해당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전진적 평가에 의해 경감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위험회피가 미래 기간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평가에 또 다른 비효과성의 원인이 계속 포함될 것이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비

ineffectiveness would continue to be included in the assessment of whether the hedge is expected to be highly effective in future periods. The Board noted that any high level of ineffectiveness arising in a hedging relationship is expected to be captured by the prospective assessment. The Board also noted that all ineffectiveness would be recognised and measured and thus be transparent in financial reporting. The Board, therefore, decided to provide an exception from the requirement to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as a result of paragraph 88(e) of IAS 39 because the actual results of the hedge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AG105(b) of IAS 39.	효과성은 전진적 평가에 의해 포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IASB는 모든 비효과적인 부분은 재무보고에 인식되고 측정되므로 투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IAS 39 문단 AG105(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IAS 39 문단 88(5)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BC253 The Board noted that the exceptions were not intended to change the requirement that entities measure and recognise hedge ineffectiveness. The Board considered that the actual results of the hedging relationships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during the period of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Therefore, the Board decided that entities should continue to measure and recognise hedge ineffectiveness as required by IFRS Standards.	BC253 IASB는 예외규정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실제 결과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기간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54 The Board also considered whether any exceptions should be made to the measurement of hedged items or hedging instruments because of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However, the Board noted that such an excep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decision not to change the requirements to	BC254 또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의 측정에 예외를 두어야 하는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예외는 재무제표에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인식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

	measure and recognise hedge ineffectivenes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the Board decided not to provide an exception from the measurement of hedging instruments and hedged items. This means that the fair value of a derivative designated as the hedging instrument should continue to be measured using the assumptions that market participants would use when pricing that derivative as required by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회피대상항목의 측정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라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들을 사용하여 계속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C255	For a hedged item designated in a fair value hedge, IAS 39 requires an entity to remeasure the hedged item for changes in fair value attributable to the hedged risk and recognise the gain or loss related to that fair value hedge adjustment in profit or loss. In doing so, the entity uses the assumptions that market participants would use when pricing the hedged item for changes in fair value attributable to the hedged risk. This would include a risk premium for uncertainty inherent in the hedged risk that market participants would consider. For example, to measure changes in fair value attributable to the hedged risk such as the IBOR component of a fixed-rate loan, an entity needs to reflect the uncertainty caused by the reform. When applying a present value technique to calculate the changes in fair value attributable to the designated risk component, such measurement should reflect market participants' assumptions about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BC255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IAS 39에서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파악하고자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과 관련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회피대상위험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위험프리미엄이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 대출의 IBOR 요소와 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위험요소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계산하기 위해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측정에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해야 한다.

BC256 When an entity designates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as the hedged item in a cash flow hedge, to calculate the change in the value of the hedged item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hedge ineffectiveness, the entity may use a derivative that would have terms that match the critical terms of the designated cash flows and the hedged risk (this is commonly referred to as a 'hypothetical derivative'). As the Board decided that entities should continue to measure and recognise hedge ineffectiveness as required by IFRS Standards, entities should continue to apply assump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those applied to the hedged risk of the hedged item. For example, if an entity designated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as the hedged item in a cash flow hedge, the entity would not assume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hedge ineffectiveness that the expected replaceme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result in zero cash flows after the replacement. The hedging gain or loss on the hedged item should be measured us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that is, the cash flows on which the hypothetical derivative is based) when applying a present value technique, discounted at a market-based discount rate that reflects market participants' assumptions about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The Board	BC256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현금흐름과 회피대상위험의 중요한 조건이 일치하는 조건을 갖는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가상의 파생상품'이라고 불린다). IASB가 IFRS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속 측정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대상위험에 적용되는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 후의 현금흐름이 영(0)이 된다고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위험회피손익은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즉, 가상의 파생상품이 기초하는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 시장기준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IASB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위험회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IASB는 실제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concluded that reflecting market participants' assumptions when measuring hedge ineffectiveness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bout the effects of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on an entity's hedging relationships. Therefore, the Board decided that no exceptions are needed for the measurement of actual ineffectiveness.	
BC 257 The Board noted that in accordance with IAS 39 an entity may designate an item in its entirety or only a portion thereof, as the hedged item in a hedging relationship. For example, an entity that issues a 5-year floating-rate debt instrument that bears interest at 3-month LIBOR + 1%, could designate as the hedged item either the entire debt instrument (that is, all of the cash flows) or only the 3-month LIBOR portion of the floating-rate debt instrument. Specifically, paragraphs 81 and AG99F of IAS 39 allow entities to designate only changes in the cash flows or fair value of an item attributable to a specific risk or risks (designated portion), provided that the designated portion is separately identifiable and reliably measurable.	BC257 IASB는 IAS 39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에서 항목 전체 또는 항목의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3개월 LIBOR+1%의 이자를 부담하는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은 전체 채무상품(즉, 모든 현금흐름) 또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3개월 LIBOR 부분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AS 39의 문단 81과 AG99F에서는 지정된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특정 위험이나 위험들(지정된 부분)에 따른 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 변동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258 The Board observed that an entity's ability to conclude that an interest rate benchmark is a separately identifiable designated por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81 of IAS 39 requires a continuous assessment over the dur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and could be affected by the reform. For example, if the outcome of the	BC258 IASB는 이자율지표가 IAS 39 문단 81에 따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부분이라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위험회피관계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개혁의 결과가 이자율지표의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LIBOR 부분이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지, 따라서 위험회피관

	reform affects the market structure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it could affect an entity's assessment of whether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LIBOR portion is separately identifiable and, therefore, an eligible hedged item in a hedging relationship. The Board considered only those designated portions that are implicit in the fair value or the cash flows of an item of which they are a part (referred to as non-contractually specified) because the same issue does not arise for designated portions that are explicitly specified in the contract.		계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인지에 대한 기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SB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하는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에 내재된 그러한 지정된 부분(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BC259	For the reasons outlined in paragraph BC227, the Board noted that discontinuing hedging relationships due to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would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Consequently, the Board decided to propose amending IAS 39 so that entities would not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solely because the designated portion is no longer separately identifiable as a result of the reform. In the 2019 Exposure Draft, the Board proposed that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for hedges of the benchmark portion of interest rate risk be applied only at the inception of those hedging relationships affected by the reform.	BC259	문단 BC227에 기술된 이유로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혁의 결과로 지정된 부분이 더 이상 별도로 식별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도록 IAS 39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부분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BC260	The Board proposed not to extend the relief to allow entities to designate the benchmark portion of interest rate risk as the hedged item in a new hedging relationship if the designated portion is not separately identifiable at the	BC260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지정된 부분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다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위험의 지표 부분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지는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별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In the Board's view, allowing hedge accounting for designated portions that are not separately identifiable at the incep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exception. The Board noted that such circumstances are different from allowing continued designation as the hedged item for designated portions that had met the requirement at the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도로 식별할 수 없는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본다. IASB는 그러한 상황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요구사항을 충족한 지정된 부분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계속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BC261	Furthermore, the Board did not propose any exception from the requirement that changes in the fair value or cash flows of the designated portion must be reliably measurable. As noted in paragraph BC243, in the Board's view, an offset between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hedge accounting model in IAS 39 and, therefore, the Board considered reliable measurement of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to be critical to maintain this principle.	BC261	뿐만 아니라, IASB는 지정된 부분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제안하지 않았다. 문단 BC24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상쇄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모형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BC262	Almost all respondents agreed with the exception proposed in the 2019 Exposure Draft to apply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only at the incep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However, some respondents noted that the proposed exception did not provide equivalent relief to hedging relationships that frequently reset (ie discontinue and restart). In those hedging relationships both the hedging instrument and the hedged item frequently change (ie the	BC262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제안한 2019년 공개초안의 예외규정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예외규정이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상응하는 완화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모두 자주 변경된다(즉 기업은 오랫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

	entity uses a dynamic process in which both the hedged items and the hedging instruments used to manage that exposure do not remain the same for long). As hedging instruments and hedged items are being added or removed from a portfolio, entities are de-designating and redesignating hedging relationships regularly to adjust the exposure. If each redesign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is considered to be the inception of a new hedging relationship (even though it is still the same hedging strategy), then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would need to be assessed for all hedged items at each redesignation even if they have been assessed previously. For the same reasons as those noted in paragraph BC258, this could affect an entity's ability to conclude that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risk component remains separately identifiable and, therefore, an eligible hedged item for hedge accounting purposes.		험회피수단 모두에 동적 절차를 사용한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거나 제거하면서 기업들은 익스포저를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재지정한다. 위험회피관계의 각각의 재지정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면(여전히 동일한 위험회피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재지정의 모든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문단 BC258에 기술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이것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여전히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여전히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라고 기업이 결론내릴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C263	The Board noted that the exception proposed in the 2019 Exposure Draft has the effect that if a non-contractually specified designated portion meets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t the inception of a hedging relationship, then that requirement would not be reassessed subsequently. Hence, providing a similar exception for hedging relationships that frequently reset (ie discontinue and restart)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BC263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예외규정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지정된 부분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그 요구사항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외규정을 제공하는 것은 2019년 공개초안에서 당초 제공한 예외규정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다.

	the exception originally provided in the 2019 Exposure Draft.	
BC264	Thus, the Board confirmed the proposal that a designated portion is only required to be separately identifiable at the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In addition, to respond to the feedback described in paragraph BC262, the Board added the exception in paragraph 102I of IAS 39 for hedging relationships that, consistent with an entity's hedge documentation, frequently reset (ie discontinue and restart) because both the hedging instrument and the hedged item frequently change. Applying that paragraph, an entity shall determine whether the designated portion is separately identifiable only when it initially designates an item as a hedged item in the hedging relationship. The hedged item is not reassessed at any subsequent redesignation in the same hedging relationship.	BC264 따라서 IASB는 지정된 부분이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제안을 확정하였다. 또 IASB는 문단 BC262에 기술된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모두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회피 문서화와 일관되게 자주 재설정(즉, 중단 및 재시작)하는 위험회피관계를 위해 IAS 39의 문단 102I에 예외규정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을 적용하여 지정된 부분을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동일한 위험회피관계에서 후속적으로 재지정하는 때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BC265	In reaching its decision for the exception in paragraph 102I of IAS 39 the Board considered an example when an entity applies hedge accounting for a 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 under IAS 39 and designates the LIBOR portion of floating-rate loans as the hedged risk. At the inception of the relationship, the entity assesses whether LIBOR is a separately identifiable designated portion for all loans designated within the hedging relationship. As the entity updates the risk position with the origination of new loans and the maturity or repayment of existing loans, the hedging relationship is	BC265 IAS 39의 문단 102I의 예외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IASB는 IAS 39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변동금리대출금의 LIBOR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하는 예를 고려하였다.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기업은 LIBOR가 위험회피관계 내에 지정된 모든 대여금에 대해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부분인지를 평가한다. 새로운 대여금의 발생과 기존 대여금의 만기도래 또는 상환에 따라 위험 포지션을 갱신할 때 위험회피관계는 '구'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업데이트된 금액에 대해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로 재지정함으로써 조정한다. IAS 39의 문단 102I의 예외규정

	adjusted by de-designating the 'old' hedging relationship and redesignating a 'new' hedging relationship for the updated amount of the hedged items. Applying the exception in paragraph 102I of IAS 39 requires the entity to assess whether LIBOR is a separately identifiable designated portion only for the new loans added to the hedging relationship. The entity would not reassess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for the loans that have been redesignated.		을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관계에 추가된 새로운 대여금에 대해서만 LIBOR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정된 부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재지정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재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BC266	The Board decided to require entities to apply the exceptions in paragraphs 102D – 102N of IAS 39 to all hedging relationships to which the exceptions are applicable. In other words, the Board decided that an entity is required to apply the exceptions to all hedging relationships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and continue to apply the exceptions until required to cease their application as specified in paragraphs 102J – 102N of IAS 39.	BC266	IASB는 IAS 39의 102D~102N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해당 예외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IASB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 적용해야 하며 IAS 39 문단 102J~102N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을 중단해야 할 때까지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67	The Board considered but rejected alternatives that would have allowed entities to apply the exceptions voluntarily. In the Board's view, voluntary application of these exceptions could give rise to selectiv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and selective reclassification of the amounts record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related to previously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s. The Board does not expect that requiring entities to apply the exceptions would entail significant	BC267	IASB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하였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선별적으로 중단하거나 종전에 중단되었던 위험회피관계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선별적으로 재분류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예외규정에서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및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므로 예외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작성자와 그 밖

	cost for preparers and other affected parties because the exceptions require entities to assum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risk and the hedged cash flows and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유의적인 원가가 들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BC 268	In addition, the Board observed that in some circumstances the exceptions in paragraphs 102D‑102N of IAS 39 may not be applicable. For example, for a particular interest rate benchmark not subject to the reform or replacement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re is no uncertainty affecting the timing or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arising from a hedged item or a hedging instrument. The exceptions set out in paragraphs 102D‑102N of IAS 39 would not be applicable to such a hedging relationship.	BC268	또 IASB는 일부 상황에서 IAS 39의 문단102D~102N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개혁이나 대체 대상이 아닌 특정 이자율지표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지표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은 없다. IAS 39의 문단 102D~102N에 명시된 예외규정은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BC269	Furthermore, for a particular hedging relationship the exceptions may be applicable to some but not all aspects of the hedging relationship. For example, if an entity designates a hedged item that is based on LIBOR against a hedging instrument that is already referenced to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suming the entity can demonstrate that hedging relationship meets the qualifying criteria for hedge accounting in IAS 39), the exceptions in paragraphs 102D and 102F of IAS 39 would apply for the hedged item because there is uncertainty related to its future	BC269	또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예외규정은 해당 위험회피관계의 모든 면이 아닌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대체 지표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해 LIBOR에 기초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위험회피관계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IAS 39의 문단 102D와 102F의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IAS 39의 문단 102F의 예외규정은 위험회피수단에 적용

cash flows. However, there is no uncertainty regarding how the reform would impact the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and, therefore, the exception in paragraph 102F of IAS 39 is not applicable for the hedging instrument. Similarly, the exception applicable to non-contractually specified designated portions would not be relevant for hedging relationships that do not involve the designation of non-contractually specified portions.	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지정된 부분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부분의 지정을 수반하지 않는 위험회피관계에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End of application	**적용 종료**
BC270 As described in paragraph BC227, the Board decided to amend IAS 39 to address specific aspects of hedge accounting affected by uncertainties in relation to the hedged items and hedging instruments about wh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s will change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when any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be determined (collectively, timing) and what the cash flows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be, including their frequency of reset, and any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collectively, amount). Therefore, the Board intended the exceptions set out in paragraphs 102D – 102N of IAS 39 to be available only while these uncertainties are present.	BC270 문단 BC227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SB는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변경되는 시기,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되는 시기(이하 '시기'로 통칭함)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는 현금흐름이 재설정 빈도를 포함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간 스프레드 조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이하 '금액'으로 통칭함)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관련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회계의 특정 부분을 다루기 위해 IAS 39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IAS 39의 문단 102D~102N에 제시된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C271 The Board considered whether to provide an explicit end date for the exceptions but decided not to	BC271 IASB는 예외규정에 대해 명시적인 종료일을 제공할지를 고려하였으나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시장과

do so. The reform is following different timelines in different markets and jurisdictions and contracts are being modified at different times and, therefore, at this stage, it is not possible to define a period of applicability for the exceptions.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일정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고 계약은 서로 다른 시기에 수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BC272 Board decided that an entity ceases applying the exceptions at the earlier of (a) when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is no longer present as it relates to a hedged item and/or hedging instrument (depending on the particular exception) and (b) the discontinua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The exceptions require entities to apply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assum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 on which the hedged risk, hedged cash flows or the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are based is not altered as a result of the reform. The end of applicability of the exceptions means that entities would from that date apply all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AS 39 without applying these exceptions.	BC272 IASB는 (1) (특정 예외규정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과(또는)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와 (2) 위험회피관계의 중단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예외규정에서는 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 또는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특정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예외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시점부터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IAS 39의 모든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exception in paragraph 102E of IAS 39 to a discontinued hedging relationship, the amendments require an entity to cease applying the exception at the earlier of (a) as described above and (b) when the entire amount that had been recognis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with respect to the hedging relationship has been reclassified to	*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IAS 39 문단 102E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서는 (1) 위에서 기술된 때와 (2) 위험회피관계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해 온 전체 금액이 모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때 중 더 이른 시점에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IAS 39 문단 102K를 참조).

profit or loss. See paragraph 102K of IAS 39.	
BC273 In the Board's view, for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ash flows arising from a change in an interest rate benchmark to be eliminated, the underlying contracts are generally required to be amended to specify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ash flows based on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nd any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Board noted that, in some cases, a contract may be amended to include reference to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thout actually altering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in the contract. Such an amendment may not eliminate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in the contract. The Board considered the following scenarios to assess the robustness of the end of application requirements. However, these scenarios are not exhaustive and other scenarios may exist in which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ash flows would no longer be present.	BC273 IASB는 이자율지표의 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려면 일반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또한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스프레드 조정)을 특정하기 위해 당초 계약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ASB는 일부의 경우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을 실제로 변경하지 않고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도록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계약상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을 없애지 못할 수 있다. IASB는 요구사항의 적용이 적절히 종료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시나리오들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모든 상황을 망라하지는 못하며 개혁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BC274 Senario A－a contract is amended to include a clause that specifies (a) the date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ll be replaced by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nd (b)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cash flows will be based and the relevant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C274 시나리오 A: (1)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되는 날짜와 (2)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할 때 이 계약의 현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n this case,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ash flows for this contract is eliminated when the contract is amended to include this clause.	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다.
BC275 Senario B－a contract is amended to include a clause that states modifications of contractual cash flows will occur due to the reform but that specifies neither the date that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ll be replaced no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amended cash flows will be based. In this case,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ash flows for this contract has not been eliminated by amending the contract to include this clause.	BC275 시나리오 B: 개정된 계약의 관련 조항에서 개혁으로 인해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은 발생할 것이라고 명시하지만 이자율지표가 대체되는 날짜나 수정된 현금흐름이 기초할 대체 지표 이자율을 특정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하더라도 이 계약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BC276 Scenario C－a contract is amended to include a clause which states that conditions specifying the amount and timing of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will be determined by a central authority at some point in the future. But the clause does not specify those conditions. In this case,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for this contract has not been eliminated by including this clause in the contract. Uncertainty regarding both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cash flows for this contract will be present until the central authority specifies when the replacement of the benchmark will become effective and wha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and any	BC276 시나리오 C: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특정하는 조건이 미래 어느 시점에 중앙 기관(central authority)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러한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 계약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관한 불확실성은 이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 모두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앙 기관이 지표 이자율의 대체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와 대체 지표 이자율 및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할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related spread adjustment will be.		
BC277	Scenario D－a contract is amended to include a clause in anticipation of the reform that specifies the date the interest rate benchmark will be replaced and any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will be determined. However, the amendment does not specify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r the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cash flows will be based. In this scenario, by amending the contract to include this claus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has been eliminated but uncertainty about the amount remains.	BC277	시나리오 D: 개혁을 예측하여 지표 이자율이 대체될 날짜와 이자율지표 및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결정될 날짜를 특정하는 조항이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한다. 그러나 개정으로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이나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이 명시되지는 않는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시기에 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BC278	Scenario E－a contract is amended to include a clause in anticipation of the reform that specifies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n which the cash flows will be based and the spread adjustment betwee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and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but does not specify the date from which the amendment to the contract will become effective. In this scenario, by amending the contract to include this clause, uncertainty about the amount has been eliminated but uncertainty with respect to timing remains.	BC278	시나리오 E: 개혁을 예측하여 현금흐름의 기초가 될 대체 지표 이자율과 이자율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사이의 스프레드 조정을 명시하되 계약의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조항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개정함으로써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BC279	Scenario F－in preparation for the reform, a central authority in its capacity as the administrator of an interest rate benchmark undertakes a multi-step process to replace an interest rate benchmark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The	BC279	시나리오 F: 개혁에 대비하여, 이자율지표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중앙기관은 이자율지표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를 수행한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현행 이자율지표의 발표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objective of the reform is to cease the publication of the current interest rate benchmark and replace it with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As part of the reform, the administrator introduces an interim benchmark rate and determines a fixed spread adjustment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im benchmark rate and the current interest rate benchmark. Uncertainty about the timing or the amount of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based cash flows will not be eliminated during the interim period because the interim benchmark rate (including the fixed spread adjustment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or) represent an interim measure in progressing towards the reform but it does not represent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or any related spread adjustment agreed between parties to the contract).		것이다. 중앙 기관은 개혁의 일환으로 예비 지표 이자율을 도입하고, 예비 지표 이자율과 현행 이자율지표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고정된 스프레드 조정을 결정한다. 예비 지표 이자율(중앙 기관이 결정한 고정 스프레드 조정을 포함함)은 개혁을 진행해 가는 과정의 중간조치에 해당하지만 대체 지표 이자율(또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관련 스프레드 조정)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기간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BC280	For reasons similar to those described in paragraph BC269, the Board noted that there could be situations in which the uncertainty for particular elements of a single hedging relationship could end at different times. For example, assume an entity is required to apply the relevant exceptions to both the hedged item and the hedging instrument. If the hedging instrument in that hedging relationship is subsequently amended through market protocols covering all derivatives in that market, and will be based on an alternative benchmark rate such that the uncertainty about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interest	BC280	문단 BC269에서 기술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IASB는 단일 위험회피관계에서 특정 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은 서로 다른 시점에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모두에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그러한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이 그 시장의 모든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시장 협약을 통해 후속적으로 변경되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초하게 됨으로써 위험회피수단의 이자율지표에 근거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면, 관련 예외규정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 계속 적용되지만 위험회피수단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e hedging instrument is eliminated, the relevant exceptions would continue to apply to the hedged item but would no longer apply to the hedging instrument.*	
* In this scenario, the entity would first consider the accounting consequences of amending the contractual terms of the hedging instrument. The Board will consider the accounting consequences of the actual amend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as a result of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n the next phase of this project (ie the replacement phase).	* 이 시나리오에서는 먼저 위험회피수단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때의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IASB는 이 과제의 다음 단계(대체 단계)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금융상품의 실제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결과를 고려할 것이다.
BC281 The Board observed that continuing to apply the exception after the uncertainty was resolved would not faithfully represent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s of the hedging relationship in which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is eliminated. The Board considered whether it should extend the relief provided such that the exceptions would apply at the hedging relationship level for as long as any element of that hedging relationship was affected by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The Board agreed that doing so would be beyond the objective of addressing only those issues directly affected by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This is also because the exceptions in paragraphs 102D–102N of IAS 39 and the respective requirements in IAS 39 apply to the same elements of the hedging relationship. Therefore, applying each exception at the hedging relationship level would be	BC281 IASB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도 예외규정을 계속 적용할 경우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없어진 위험회피관계의 요소들에 대한 실제 특성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IASB는 완화규정을 확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일부 요소라도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한 예외규정이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려하였다. IASB는 그렇게 하는 것은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이것은 IAS 39의 문단 102D~102N의 예외규정과 IAS 39의 각각의 요구사항이 위험회피관계의 동일한 요소에 적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회피관계 수준에서 각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nconsistent with how the underlying requirements are applied.		
BC282	The Board decided that the end of application requirement would also apply to hedges of a forecast transaction. The Board noted that IAS 39 requires an entity to identify and document a forecast transaction with sufficient specificity so that, when the transaction occurs, the entity is able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action is the hedged transaction. For example, if an entity designates a future issuance of a LIBOR-based debt instrument as the hedged item, although there may be no contract at the time of designation, the hedge documentation would refer specifically to LIBOR. Consequently, the Board concluded that entities should be able to identify when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timing and the amount of the resulting cash flows of a forecast transaction is no longer present.	BC282	IASB는 요구사항 적용의 종료가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IASB는 IAS 39에서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거래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예상거래를 식별하여 문서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만약 기업이 미래에 발행할 LIBOR에 기초한 채무상품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다면, 지정 시점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위험회피 문서화는 LIBOR를 분명하게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언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283	In addition, the Board decided not to require end of application with respect to the exception for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s set out in paragraphs 102H and 102I of IAS 39. Applying these exceptions, entities would continue applying hedge accounting when an interest rate benchmark meets the separately identifiable requirement at the inception of the hedging relationship (assuming all other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continue to be met). If the Board included an end date	BC283	또한 IASB는 IAS 39 문단 102H와 102I에서 제시된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는 적용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이자율지표가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모든 다른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이 계속 충족된다고 가정). 만약 IASB가 예외규정의 종료일을 포함하였다면, 어느 시점(예: 대체 지표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형성)에는 개혁이 진행됨에 따

	for these exceptions, an entity may be required to immediately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because, at some point, as the reform progresses, the designated portion based on the interest rate benchmark may no longer be separately identifiable (for example, as the market for the alternative benchmark rate is established). Such immediate discontinuation of hedge accounting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exception. The Board noted that linking the end of application for these exceptions to contract amendments would not achieve the Board's intention either because, by definition, non-contractually specified designated portions are not explicitly stated in a contract and, therefore, these contracts may not be amended for the reform.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for fair value hedges of a fixed-rate debt instrument. Therefore, the Board decided that an entity should cease applying the exceptions to a hedging relationship only when the hedging relationship is discontinued applying IAS 39.		라 이자율지표에 근거한 지정된 부분이 더 이상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즉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예외규정의 목적에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이러한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 종료를 계약 변경에 연결 지을 경우 IASB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의에 따라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지정된 부분은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그 결과 이러한 계약은 개혁 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IASB는 위험회피관계가 IAS 39를 적용할 경우 중단될 때에만 위험회피관계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84	Some respondents to the 2019 Exposure Draft noted that the Board had not addressed when an entity ceases applying the proposed exceptions to a group of items designated as the hedged item or a combin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designated as the hedging instrument. Specifically, when assessing whether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is no longer present, these respondents asked whether that	BC284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항목 집합 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결합에 대하여 제안된 예외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지를 평가할 때, 이 의견제출자들은 그 평가가 개별기준으로(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집합 기준으로(즉, 집합을 구성하

	assessment should be performed on an individual basis (that is, for each individual item within the group or financial instrument within the combination) or on a group basis (that is, for all items in the group or all financial instruments in the combination until there is no uncertainty surrounding any of the items or financial instruments).		는 개별 항목 모두 또는 결합에 포함된 금융상품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집합 내의 모든 항목 또는 결합 내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BC285	Consequently, the Board decided to add paragraph 102N of IAS 39 to clarify that, when designating a group of items as the hedged item or a combin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s the hedging instrument, entities assess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the reform with respect to the hedged risk and/or the timing and amount of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of that item or financial instrument is no longer present on an individual basis－that is, for each individual item in the group or financial instrument in the combination.	BC285	결과적으로, IASB는 항목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회피대상위험과 (또는) 그 항목 또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해 개별 기준으로 (즉, 집합 내의 각 개별 항목 또는 결합 내의 금융상품에 대해)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없는 시점을 평가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IAS 39 문단 102N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s		**시행일과 경과규정**	
BC286	The Board decided that entities shall apply the amendments for annual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0, with earlier application permitted.	BC286	IASB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고 결정하였다.
BC287	The Board decided that the amendments apply retrospectively. The Board highlighted that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amendments would not allow reinstating hedge accounting that has already been discontinued. Nor would it allow designation in hindsight. If an entity had not designated a hedging relationship,	BC287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예외규정이 소급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지정되지 않았던 과거기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the exceptions, even though applied retrospectively, would not allow the entity to apply hedge accounting in prior periods to items that were not designated for hedge accounting. Doing so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 that hedge accounting applies prospectively.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exceptions would enable entities to continue hedge accounting for a hedging relationship that the entity had previously designated and that qualifies for hedge accounting applying IAS 39.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허용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예외규정의 소급적용으로 기업이 이전에 지정했고 IAS 39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는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BC288	Many respondents to the 2019 Exposure Draft commented on the clarity of the proposed retrospective application and suggested that further explanation be provided in the Standard. Consequently, the Board amended the transition paragraph to specify that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lies only to those hedging relationships that existed at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ese amendments or were designated thereafter, and to the gain or loss recognised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that existed at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ese amendments. The Board used this wording to permit an entity to apply the amendments from the beginning of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ese amendments even if the reporting period is not an annual period.	BC288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소급적용의 명확성에 대해 언급하고 기준서에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IASB는 그 개정사항들을 처음으로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위험회피관계나 그 후에 지정한 위험회피관계와 그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한 보고기간의 기초에 존재했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손익에만 소급적용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과규정의 문단을 개정하였다. IASB는 보고기간이 연차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개정사항들을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기초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This Basis for Conclusions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FRS 7. After paragraph BC35SS, a new subheading and paragraphs BC35TT – BC35CCC are added.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BC35SS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 및 문단 BC35TT~BC35CCC가 추가되었다.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BC35TT In May 2019 the Board published the Exposure Draft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2019 Exposure Draft), which proposed exceptions to specific hedge accounting requirements in IFRS 9 and IAS 39 to provide relief in the period before the reform of interest rate benchmarks. The Board issued the final amendments to IFRS 9 and IAS 39 in September 2019. Paragraphs BC6.546 – BC6.603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9 and paragraphs BC223 – BC288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39 provide the background to these amendments.	BC35TT 2019년 5월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 이전 기간에 대하여 완화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IFRS 9와 IAS 39의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 '이자율지표 개혁'(2019년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2019년 9월 IFRS 9와 IAS 39의 최종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IFRS 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546~BC6.603과 IAS 39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23~BC288은 이러한 개정의 배경을 제공한다.
BC35UU In the 2019 Exposure Draft, the Board proposed that entities applying the exceptions provide disclosure about the magnitude of the hedging relationships to which the exceptions apply. As explained in paragraph BC44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the 2019 Exposure Draft, the Board noted that IFRS 7 already requires specific disclosures about hedge accounting. The Board proposed that for some specifically identified disclosures, information be provided separately for hedging	BC35UU 2019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예외규정을 적용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에 대한 공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9년 공개초안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FRS 7에서 이미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일부 식별된 특정 공시사항과 관련하여 제안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에 관해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특히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IFRS 7의 문단 24A(1), 24A

	relationships to which the proposed exceptions apply. Specifically, the Board proposed that an entity provide separately th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s 24A(a), 24A(c) – (d), 24B(a)(i) – (ii), 24B(a)(iv) and 24B(b) of IFRS 7 for hedging relationships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⑶~⑷, 24B⑴㈎~㈏, 24B⑴㈐ 및 24B⑵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BC35VV	Most respondents to the 2019 Exposure Draft agreed that information about the magnitude of the hedging relationships to which the proposed exceptions apply would be useful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However, respondents had mixed views on whether the proposed disclosure requirements struck the right balance between the expected benefits for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expected cost for preparers. As a result, these respondents suggested simplifying the proposed disclosure requirements.	BC35VV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관계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공시요구사항이 재무제표이용자의 기대효익과 재무제표작성자의 기대 원가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하여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이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을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BC35WW	In addition,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ld the Board that, since the proposed amendments to IFRS 9 and IAS 39 would be mandatory, information about the extent to which an entity's hedging relationships are within the scope of the exceptions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Such information could be provided by requiring entities to disclose the nominal amounts of hedging instruments in hedging relationships in the scope of the amendments, supplemented with an explanation about how the	BC35WW	또 재무제표이용자들은 IFRS 9와 IAS 39의 개정안이 의무 적용사항이므로 기업의 위험회피관계가 어느 정도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IASB에 말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개정사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으며,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하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공시는 기업의 위험회피관계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재무

	entity is managing the process to transition to alternative benchmark rates. These disclosures would help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understand how an entity's hedging relationships are affected by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BC35XX	On the basis of respondents' comments and feedback from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he Board decided to require entities to provide the disclosures set out in paragraph 24H of IFRS 7 for hedging relationships directly affected by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BC35XX	의견제출자들의 외부검토의견과 재무제표이용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IFRS 7 문단 24H의 공시사항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35YY	Specific to the disclosure requirement in paragraph 24H(d) of IFRS 7, the Board acknowledged that given the objective and specificity of the amendments to IFRS 9 and IAS 39, there may be limited additional assumptions or judgements in the context of applying those exceptions. For example, the exceptions specify the assumptions to make about the interest rate benchmark-based cash flows. Nevertheless, the Board observed that if an entity makes significant assumptions or judgements in applying the exceptions in those amendments (for example, to determine when the uncertainty arising from 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 is no longer present), that would be useful information for th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BC35YY	IASB는 IFRS 7 문단 24H⑷의 공시요구사항과 관련하여, IFRS 9와 IAS 39의 개정의 목적과 구체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데 추가적인 가정이나 판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예외규정은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이 개정사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적인 가정이나 판단을 한다면(예: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공시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개정사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한 유의적인 가정이나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Accordingly, the Board decided to require entities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any significant assumptions or judgements that the entity makes in applying the exceptions in the amendments.		
BC35ZZ	The Board noted that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24H(e) of IFRS 7 is intended to provid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with information about the quantum of hedging relationships which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That paragraph requires disclosure of the nominal amount of the hedging instruments in a hedging relationship directly affected by the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so that the information is disclosed on a gross basis rather than on a net basis (that is, offsetting hedging instruments in a liability position against those in an asset position).	BC35ZZ	IASB는 IFRS 7 문단 24H(5)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문단에서는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을 공시하여 순액기준(자산 포지션의 위험회피수단과 부채 포지션의 위험회피수단을 상계)이 아닌 총액기준으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35AAA	Some respondents to the 2019 Exposure Draft raised concerns about the disclosure requirement in paragraph 28(f) of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This paragraph requires an entity, on the initial application of an IFRS (or amendments to an IFRS), to disclose, for the current period and each prior period presented, the amount of any adjustment for each financial statement line item affected.	BC35AAA	2019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28(6)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 문단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 기간에 대하여 IFRS(또는 IFRS의 개정)를 최초로 적용할 때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35BBB	These respondents said that requiring such disclosure for the amendments to IFRS 9 and IAS 39 would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also would be onerous for preparers. This is because it would require an entity to maintain parallel systems in order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adjustment for each financial statement line item affected. Furthermore, disclosing this information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Board's observation in paragraph BC6.550 of IFRS 9 and paragraph BC227 of IAS 39, that discontinuing hedge accounting solely due to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reform would no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BC35BBB	이 의견제출자들은 IFRS 9와 IAS 39의 개정에 대하여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재무제표작성자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이 시스템을 병행하여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오로지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IFRS 9 문단 BC6.550과 IAS 39 문단 BC227에 기술된 IASB의 판단과 일관되지 않는다.
BC35CCC	The Board agreed with these comments and decided to exempt entities from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28(f) of IAS 8 in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the amendments to IFRS 9 and IAS 39.	BC35CCC	IASB는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동의하였고 IFRS 9와 IAS 39의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대해서는 IAS 8 문단 28(f)의 요구사항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붙임 1 >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 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⑦ (생 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2